사후자기결정권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고립사·무연사와 공영장례

화우공익재단
설립 5주년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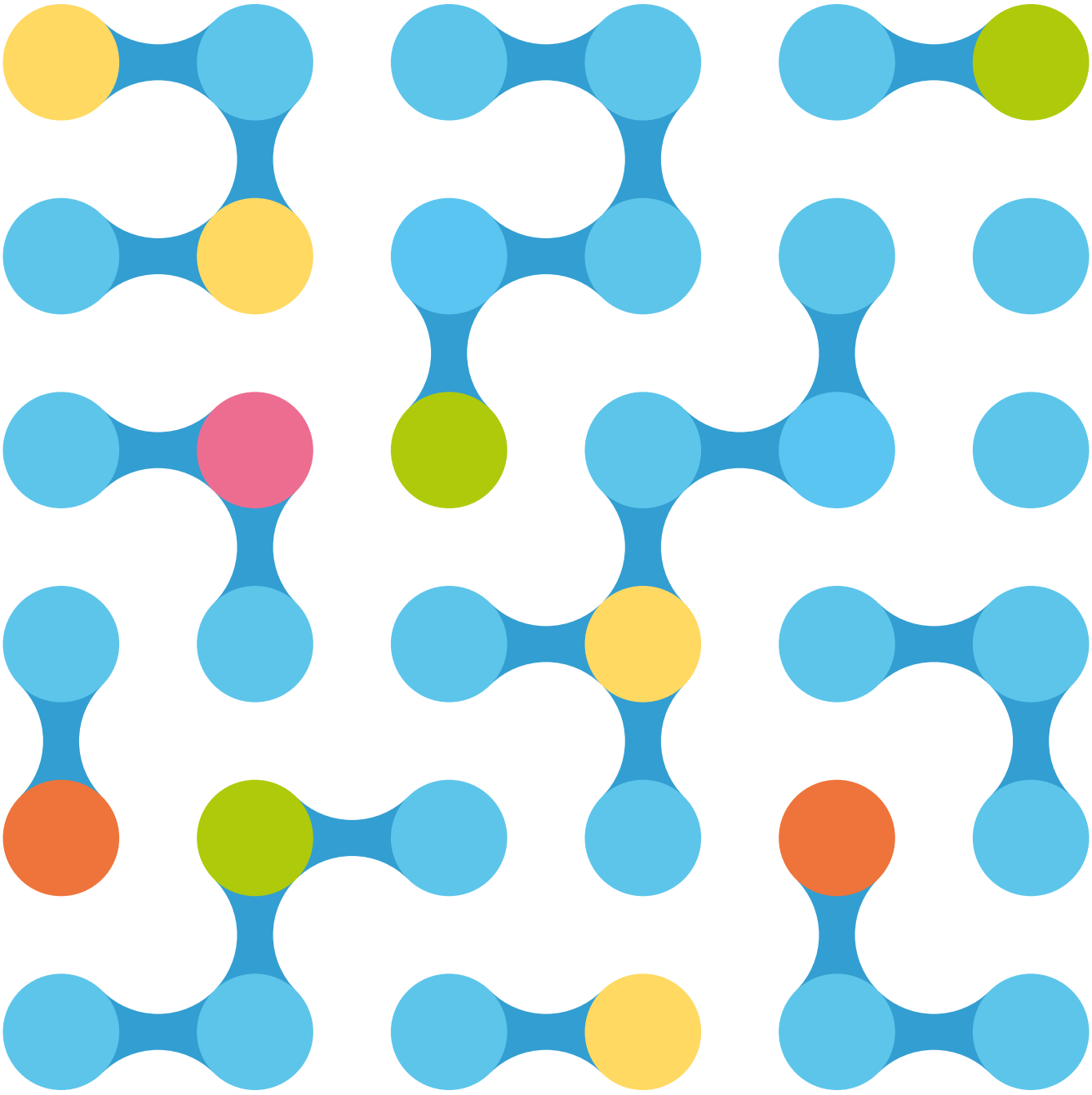

법무법인(유) 화우 · (재) 화우공익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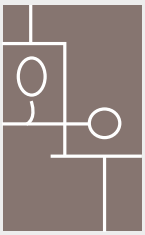

일정표

화우공익재단 설립 5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사후자기결정권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부제: 고립사·무연사와 공영장례>

시간		내용	
14:00-14:05	5	개회사	박영립(화우공익재단 이사장)
14:05-14:10	5	축사	박양숙(전 서울시 의원)
좌장: 정현경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14:10-14:30	20	발제1_한국의 무연고사망자의 사후자기결정권 실태 및 정책제언	박진옥((사) 나눔과 나눔 상임이사)
14:30-14:50	20	발제2_한국의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법제 검토 및 입법제안	양희철(법무법인 명륜 변호사)
14:50-15:10	20	발제3_자기결정에 의한 계약가족 만들기 활동 - 생전계약 프로그램 실천사례	마츠시마 뇨카이(일본 LISS 대표)
15:10-15:30	20	발제4_일본의 임종기 및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지원	히가쉬타니 유키마사 (정신의료 국가배상청구소송 연구회 대표)
15:30-15:50	20	발제5_대만의 무연고사망자 문제 및 관련 규제	왕안기(국립대만대학교 박사과정)
15:50-16:10	20	휴식	
16:10-16:20	10	토론1	송인주(서울시 복지재단 연구원)
16:20-16:30	10	토론2	김효석(법무사)
16:30-16:40	30	토론3	야마다 미노루 (카마가사키 지원기구 이사장)
16:40-17:00	20	상호토론	발제자, 토론자
17:00-17:20	20	자유토론	참가자
17:20~	10	폐회	

목차

일정표 **02**

인사말 **04**

발제

발제1. 한국의 무연고사망자의 사후자기결정권 실태 및 정책제언 | **박진옥((사) 나눔과 나눔 상임이사)** **06**

발제2. 한국의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법제 검토 및 입법제안 | **양희철(법무법인 명륜 변호사)** **17**

발제3. 자기결정에 의한 계약가족 만들기 활동 -생전계약 프로그램 실천사례 | **마츠시마 뇨카이(일본 LISS 대표)** **29**

<참고 자료> 법과 인권 | **오쿠다 마사미치(전 최고재판소 판사)** **32**

발제4. 일본의 임종기 및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지원 **34**

| **히가쉬타니 유키마사(정신의료 국가배상청구소송 연구회 대표)**

발제5. 대만의 무연고사망자 문제 및 관련 규제 | **왕안기(국립대만대학교 박사과정)** **37**

지정 토론

토론1. **송인주(서울시 복지재단 연구원)** **52**

토론2. **김효석(법무사)** **55**

토론3. **야마다 미노루 (카마가사키 지원기구 이사장)** **58**

<참고 자료> '일본 오사카의 행려사망 실태'

발제 원문 및 번역문

<발제1. 요약 번역문> Status of Post-Mortem Right of Self-Determination for the Unclaimed Dead in Korea and Policy Proposals **65**

| **Jin-ok Park(Executive Director at Good Nanum Incorporated Association)**

<발제2. 요약 번역문> Necessity for a legislation on comprehensive response to solitary deaths and unclaimed deaths | **Hee-chul Yang(Attorney at law)** **66**

<발제3. 원문> 決定による契約家族づくり活動 - 生前契約プログラムの 事例 | **松島 如戒(LISS 代表)** **68**

<발제3. 참고 자료> 法と人権 | **奥田 昌道 (元最高裁判所判事)** **72**

<발제4. 원문> 日本における、終末期および死に関する自己決定権支援 **74**

| **東谷幸政(精神医療国家賠償請求訴訟研究会 代表)**

<발제 5. 원문> Unclaimed dead issue and regulations in Taiwan **78**

| **Anne-chie WANG 王安琪(Ph. D Candidate, National Taiwan University)**

<토론 3. 참고 자료> 行旅死亡人 区別·年度別件数 **92**

발제자 및 토론자 약력 **94**

화우공익재단 소개

목표 **100**

조직 구성 **101**

연혁 **102**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립사와 무연사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화우에서 2012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공익위원회를 설립한 데 이어,

보다 체계적인 공익활동 수행을 위해 화우공익재단을 설립된 지 어느덧 5주년을 맞았습니다.

화우공익재단은 지금껏 한센 인권과 홈리스 법률지원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폈으며 9차례에 걸친 공익세미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논쟁적인 공익 이슈를 짚어왔습니다.

공익재단은 올해 5주년을 기념해 사후자기결정권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한국과 일본, 대만의 전문가들과 함께 고립사와 무연사, 공영장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어느 정도 물질적 풍요를 경험하고 있지만 기계론적 세계관의 이면에는

인간관계의 단절과 고립이라는 짙은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유리되어

고독한 삶을 살아가다 결국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소식을 심심찮게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립된 삶과 죽음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붕괴,

혈연 중심의 전통과 현실의 괴리, 사회 안전망의 부재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위기에 직면하여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개인이

자신의 죽음과 장례, 그 이후에 대해 유효한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에서는 위와 같은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면서 각국의 현실에 맞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각국의 고립사 및 무연사 실태를 비교하고 그에 대한 해법의 하나인

공영장례 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인이 자신의 뜻대로 장례를 비롯한 사후사무(死後事務)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화우공익재단은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공익재단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애정 어린 비판과 관심, 응원에 힘입어 초심을 잃지 않고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9. 19.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박 영 립

발 제

발제1.

한국의 무연고사망자의 사후자기결정권 실태 및 정책제언

박진옥 | (사)나눔과 나눔 상임이사

1. 무연고사망자 현황 및 특징

가. 무연고사망자의 개념 정의

무연고사망자의 개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장사업무안내」[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무연고사망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사업무안내」에서는 무연고사망자[2]란 첫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둘째,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셋째,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사망자를 말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란,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며, 다음으로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체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규정된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와 이 외에도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과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한편, 무연고사망자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개념은 '고립사(孤立死)[3]'다. 이에 대해 학술적 정의가 합의된 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자택에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혼자 사망하고 수일이 지난 후 발견되는 경우를 말한다(정은주·정봉현, 2017: 134). 고립사는 사회적 고립과 임종의 과정이 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무연고사망자는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의 유무'가 그 결정 기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혼자 살다, 홀로 임종하고 며칠 후에 발견된 시신의 경우 무연고사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고립사한 사람이 모두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무연고사망자의 상당수는 병원에서 사망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고립사한 것 또한 아니다.

나. 무연고사망자 장사(葬事)업무 행정절차

무연고사망자 발생 시 행정 처리 절차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이 그 시신을 운구해 화장하고 봉안까지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망 시부터 진행되는 행정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사망 장소에 따라 최초 행정절차가 구별된다. 사망 장소는 대표적으로 '병원'과 주거지·거리 등 '병원 외의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는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고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안치한 이후 가족 등 연고자를 찾는다. 둘째, 주거지·거리 등 '병원 외의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는 경찰이 사망현장에서 병사 및 범죄 여부 등을 파악하고 검안의사로부터 검시소견이 있는 '시체 검안서'를 발급받는다. 이때 병사가 아닌 경우에는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부검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검사가 발급하는 '검시 필증'이 발행된다.

---

1) 2018년도 장사업무안내(보건복지부, 2019.3.20.검색)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장사업무안내」에서는 '무연고사망자'를 '무연고 시신'으로 표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권리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사망자'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3) 흔히 '고독사'라고 하지만, '사회적 고립'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고립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후 행정절차는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장사업무안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의료기관의 장 또는 경찰서장 등에게 무연고 시신을 인수한 시장 등은 사망자의 연고자 여부를 재확인한다. 이때 연고자가 확인되면 그 연고자에게 지체 없이 시신을 인도한다. 하지만 여기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는 무연고 시신처리 절차에 따른다.[4] 둘째,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부족,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시신처리 위임서'[5]를 받아 무연고 시신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셋째, 연고자를 찾은 후 시신인수 여부 또는 위임여부를 안내하였으나, 연고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고 기피하는 경우에는 시신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두 번째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 처리 후에는 공고하지 않고 연고자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연고 시신은 10년 동안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하며,[6] 이때 시장 등은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 무연고사망자 통계 및 특징

무연고사망자는 2013년 1,280명에서 2017년 2,010명으로 지난 4년간 57%가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399명), 인천(180명), 부산(137명), 대구(116명) 등의 순이다.[7]

이러한 무연고사망자 통계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연령별 특징이다. 2017년 무연고사망자(2,010명) 중 64세 이하(1,057명)의 비율이 52.6%로 중장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진행 되지 않아 정확한 분석은 할 수 없지만, 그 배경을 20년 전 발생한 외환위기, 산업구조조정, 금융위기, 대량 해고 등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즉 오늘날의 무연고사망자는 한 국가의 경제위기가 망가뜨린 수많은 가정의 또 다른 모습이자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65세 이상의 경우 2013년 464명에서 2017년 835명으로 4년간 80%나 급증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노인 무연고사망자 역시 중장년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둘째, 성별 특징으로 남성(1,480명)의 비율이 여성(412명)보다 3.6배나 높다. 이 특징 역시 관련 연구를 찾기 어려워 그 이유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 사회문화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남자, 혼자 죽다(성유진 외, 2017: 298)' 책에서는 '남자는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남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관계를 끊어 버리게 했다고 분석하면서,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불안정 고용과 저소득층 증가,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다는 인식, 각자도생의 풍조,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 중장년층의 복지시스템의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무연고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 사회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 속에 자라온 남자들에게 더 치명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한국 사회문화가 남성 무연고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2. 무연고사망자의 사후자기결정권 관련 문제점

지금까지 무연고사망자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봤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사망자의 죽음의 문제가 '죽음'이라는 극히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가족 중심의 혈연공동체의 그 기능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4) 외국인 사망자의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적 영사에게 자국민 여부, 자국 내 연고자 파악 및 시신 인수를 요청한 후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무연고 시신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시신처리 위임서'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연고자에게 시신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 무연고 시신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한 서류를 말한다. 흔히 이를 '시체포기각서' 등의 이름으로 부른다.

6) 봉안 기간이 끝났을 때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하여야 한다.

7) 지난해 고독사 2000명 넘어섰다...65세 이상이 40%(이택현, 2019.3.10.검색)

사회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997년 한국경제위기 이후 가족해체와 실업과 빈곤이 증가하면서 1인 가구의 역기능과 함께 사회적 고립의 증가가 20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현상화된 사회이슈가 바로 무연고사망자의 죽음의 문제이다.

이러한 무연고사망자의 문제점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죽음 이후 발생하는 장례 등 사후사무다. 여기서는 사후사무와 관련해서 사망 후 시신 위임과정, 연고자의 범위와 그 순위의 적용 그리고 사후자기결정 관련 문제와 그 사례까지 살펴봤다.

가. 시신 위임과정의 문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연고사망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족 즉,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가족이 없는 사람은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규정된 연고자의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무연고사망자는 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또는 연고자가 시신을 위임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7년 9월 13일 자 서울경제신문에는 가족이 확인된 무연고사망자 비율이 전국평균 89.7%, 서울시는 96.3%였다고 보도했다.[8] 다시 말해 무연고사망자는 연고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 또는 오랜 단절 등의 이유로 가족의 시신을 국가에 위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의미다. 시신위임서에는 위임사유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 간단하게 작성된 위임 사유 대부분은 이혼이나 가출 등으로 수십 년간 서로 관계가 단절되었고 현재 경제적으로도 어렵다는 내용이다. 또한 고인의 시신을 인수하려고 해도 그동안 치료받으며 발생한 병원비 및 가족을 찾기까지 발생한 안치료 그리고 장례에 드는 비용까지 몇 백만 원에서 때로는 천만 원 이상의 상당한 비용이 한꺼번에 연고자에게 요구된다. 결국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시신인수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인간적 도리를 다하려고 해도 경제적 이유가 시신인수를 거부하게 한다.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나눔과나눔에 따르면 2018년 11월 말 현재 350여 건의 무연고사망자 중 가족 또는 지인이 참여한 장례가 약 60여 건이라고 한다. 장례에 참여했던 가족 또는 지인들은 최소한의 여건만 되었다면 고인을 무연고사망자로 보내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장례에 참여한 몇몇 가족들에 따르면 가족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가서 시신을 확인한 후 장례식장 담당자에게 안내받은 사항은 "돈이 없으면 시신을 포기"하라는 말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은 무연고사망자 장례 등 사후사무에 대한 적절한 정부 정책이 부재한 것이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왜냐하면 무연고사망자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 실무자의 경우 시신위임서를 받으면 망자를 무연고사망자로 판단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연고자 등이 망자의 장례 등 사후사무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관련 단체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에 대한 업무지침은 없다.

나. 연고자 범위와 그 순위의 적용 문제

앞서 무연고사망자 개념 정의를 내리면서 연고자의 범위를 살펴봤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6호에 규정된 연고자의 범위에 있는 사람 중 누구든 연고자가 시신을 인수하면 무연고자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연고자 범위에서 선순위에 있는 연고자가 시신인수를 포기하면 후순위에 있는 연고자는 시신을 인수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은 무연고사망자 두 분의 장례사례를 통해 현장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8) 서울 무연고주검 100건 중 96건은 가족도 외면했다(송영규, 2019.3.10.검색)

[사례 1] 이모가 조카의 장례를 못 한 사례

2018년 5월 말, 중랑구 한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돌아가신 무연고사망자 최○○ 님의 장례가 있었다. 장례식에는 고인의 나이 든 이모와 함께 고인을 가까이서 돌보던 이웃 두 분도 함께 참여했다. 고인은 이모 집 부근에 살았다. 그래서 이모가 자주 들러 고인을 챙겼다고 한다. 마지막 병원치료 때도 이모가 곁에 있었다. 하지만 고인이 돌아가신 후 장례만은 이모가 할 수 없었다. 이유는 오랫동안 고인과 연락도 하지 않고 멀리 다른 지역에서 살고 계신 어머니가 고인의 시신을 구청에 위임해서 무연고사망자가 됐기 때문이다.

[사례 2] 동생이 형님의 장례를 못 한 사례

2018년 6월 중순, 서대문에서 사시다가 심장성 쇼크로 돌아가신 이○○ 님의 장례에 동생이 참여했다. 동생은 갑자기 쓰러지신 형님 곁에서 임종을 지켰다. 너무나 황망했다. 하지만 동생에게 장례는 허락되지 않았다. 자녀들이 오랜 단절과 경제적 이유로 시신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동생은 조카들을 설득해서 형님의 장례를 치르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결국 조카들의 전화번호는 알 수 없었고, 형님의 장례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무연고사망자 장례식에 와서야 치를 수 있었다.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 님과 이○○ 님 모두 연고자가 있었고,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었다. 왜냐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이 법 제2조의 제16호에 따르면, 시신 인수의 최우선권은 아내 또는 남편이고 자녀가 2순위, 부모가 그다음이다. 그리고는 손녀·손자 등 자녀 외의 직계비속과 할머니·할아버지 등 부모 외의 직계존속이 각각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형제·자매는 여섯 번째다. 이 순서에 따라 연고자는 권리·의무를 행사한다. 그래서 이○○ 님의 자녀가, 최○○ 님의 부모가 시신 인수를 하지 않았을 때 이모가 그리고 동생이 장례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날 사회 문제가 되는 무연고사망자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오히려 양산하고 무연사회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법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할 지점이다.

이러한 현실 역시 시신위임 과정과 같이 무연고사망자 장례 등 사후사무에 대한 적절한 정부 정책이 부재한 것이 한 원인이다. 현재 시신위임서를 한 사람에게만 받을지 혹은 연고자가 여러 명 있을 때 모두에게 받을지 여부는 무연고사망자 관련 업무 실무 공무원의 재량행위이다. 연고자 범위 중 한 사람에게만 받아도 무방하며, 연고자 범위 있는 여러 사람에게 모두 받아도 상관없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나눔과나눔에 따르면 '시신위임서'가 1장만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람의 '시신 위임서'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체로는 앞 순서에서부터 연락이 되는 사람에게서 '시신 위임서'를 받고, 그 사람에게 다른 연고자를 대표해서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받는 실정이다. 그래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6호에 연고자 범위에 있지만 후순위 연고자라는 이유를 망자의 장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다. 삶의 동반자 등이 진행할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 장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혈연 중심의 가족제도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혈연의 가족이 아니면 망자에 대한 그 어떤 사후사무 행위도 할 수 없다. 즉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장례 등의 사후사무를 진행하고 싶어도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장례와 사망신고는 원칙적으로 혈연의 가족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실의 법·제도가 이렇다 보니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등 사후사무를 가족이 아닌 삶의 동반자였던 혹은 친밀한 관계에 있던 누군가가 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로 20년을 살았던 남편이 본인 품에서 돌아가신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싶었지만, 무연고사망자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시장 상인들도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았던 이웃 상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 장례를 치르고 싶었지만, 한국 사회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 약속을 했던 남자친구에게 본인의 장례를 부탁한다고 유언장

을 남겼지만 역시 혈연의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무연고사망자로 보내야 했다. 혈연이라는 가족의 테두리는 여러 삶의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죽음이라는 통과의례에서 혈연이라는 가족의 존재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다.

삶의 동반자 등이 장례 등 사후사무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무연고사망자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무연고사망자 장례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3] 약혼녀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못 한 사례

2018년 2월 초,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파혼하고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한 무연고사망자 여성의 장례가 있었다. 그 여성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면서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에는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을 보호자로 지정할 테니 화장해서 뿌려 달려는 내용이었다. 이 유언장을 본 연인은 마지막 유언을 지켜주기 위해 변호사도 만나고 경찰에 부탁도 하고 백방으로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아무리 유언장이 있다고 해도 혈연의 가족이 아니면 장례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결국 나눔과나눔에서 진행하는 무연고사망자 장례의식에 참여해서야 고인을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사례 4]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장례를 못 한 사례

2018년 5월 말, 강○○ 님의 무연고사망자 장례가 있었다. 사실혼 관계의 남편은 부인의 장례를 치르려고 했지만 병원으로부터 시신을 인수할 수 없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았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서로 남남이었기 때문이다. 사실혼 관계의 남편은 법적 배우자가 아니라 시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고, 전남편과 강 씨 슬하의 자식들은 구청에서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리하여 강 씨는 '무연고자'가 됐다. 사실혼 관계의 남편은 "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법적 부부가 아니라 시신을 내어줄 수가 없대요. 법이 그렇대요"라며 본인이 장례를 했다면 마음이 더 가벼웠을 거라고 했다.

[사례 5] 고아원 출신의 친구들이 장례를 못 한 사례

2018년 9월 말, 김○○ 님의 무연고사망자 장례가 있었다. 그는 서울시 관악구에 사시다 관악구 신림동 소재 체육공원에서 돌아가신 채 발견되었다. 사인은 외인사로 고인 스스로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고아 출신으로 가족이 아무도 없어 무연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고아원 출신의 친구들이 있었다. 서울시 무연고사망자 장례식에 참여한 고아원 출신의 친구들은 개가 죽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를 하겠다고 구청 직원과 경찰과 싸웠다고 했다. 부모가 없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항의했지만 친구를 무연고사망자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고인은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 전 집안 정리 후 "그동안 고마웠어"라며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례 6] 함께 동고동락 했던 시장 상인들이 장례를 못 한 사례

2018년 3월, 최○○ 님의 무연고사망자 장례가 있었다. 그의 지인들은 장례식 한 번 해보겠다고 경찰서에도 가보고 구청에도 가보았지만 '가족을 찾아야 한다'는 답만을 들었다. 사실상 법적 혈연 가족이 아니면 그의 시신을 위임받아 장례를 치를 수 없었다. 구청 측은 주민등록상에 남아 있는 그의 연고자들에게 연락했으나 끝내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최○○ 님은 무연고사망자가 됐다. 구청은 화장하는 날 나눔과나눔에서 장례식을 한다며 원하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고인과 친밀했던 이들과 함께 장례식에 참여했다. 지인들은 "무연고자라고 험하게 가는 거 아닐까 걱정했는데, 아주 엄숙하게 잘해주어서 고맙다"고 거듭 말했다. 그것이 남은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사례 7] 돌봄을 제공하던 이웃이 장례를 못 한 사례

2019년 7월, 김○○ 님 무연고사망자 장례가 있었다. 이날 장례에 참여했던 지인은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려고 했지만,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참 많이도 낙심했다고 한다. 단절돼서 살아온 가족들에게도 연락해서 돈은 내가 지불할 테니 와서 위임장이래도 써줘라. 그것만 해주면 된다. 애원해도 가족들은 전화번호마저도 바꿔버려서 어쩔 수 없이 김○○ 님을 무연고사망자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인연이 맺어진 것은 10년 전 우연히 어머니와 같은 병실을 쓰면서 외삼촌과 같은 연배라는 이유였다고 한다. 이러한 인연으로 살아 계신 동안에는 임대주택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면서 서류도 넣고 집에 세간살이도 전부 자비로 사서 장만해놓고 고인이 몸만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해놓았는데 갑작스레 뇌출혈로 돌아가셨다. 그리고는 장례를 치르고 싶었지만 넘어설 수 없는 법과 제도의 현실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르면 동거친족은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 의무가 있고, 그 외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혈연관계의 연고자가 장례와 사망신고를 진행한다. 법과 제도가 이렇다 보니 앞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가족은 아니지만, 삶의 동반자 등이 장례 등의 사후사무를 진행하려고 해도 시신을 인수하는 첫 단계부터 불가능하다. 반면 오랜 단절로 연락 한번 하지 않았던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마치 마지막 특권처럼 장례와 사망신고의 의무를 준다. 과연 망자는 어떠한 방식의 장례를 원했을까?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혈연의 가족이 아닌,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던 사람에게 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연고자가 시신을 위임한다면 삶의 동반자 등에게 시신을 인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을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이제는 1인 또는 2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직계가족이 아니어도 나와 함께 삶을 공유하는, 내가 믿는, 절망 속에 언제나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장례를 하고 싶다면 국가가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라. 장례 등 사후사무를 진행할 사람이 없는 예비 무연고자

앞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장례 등의 사후사무의 문제는 무연고사망자 뿐 아니라 예비 무연고사망자라고 할 수 있는 가족과 단절된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나눔과나눔에 다음과 같은 상담 및 문의 전화가 온다.

[사례 8] 직계가족 없는 40대 남성

2017년 10월,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나눔과나눔 사무실에 40대 후반 남성이 전화했다.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아버지와는 거의 관계가 없는 상태이고, 어머니는 5년 전 즈음부터 실종상태에요. 어머니 외가 쪽 친척은 있지만 연락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이복형제도 있지만 역시 왕래하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아 직계가족도 없고요. 작년에 친누나가 돌아가셔서 이제는 정말 주위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현재는 요양 때문에 전라도에 와 있는데, 죽음이 걱정이에요. 내가 죽으면 왕래도 없는 친척, 이복형제가 시신을 포기할 거고. 그러면 무연고사망자가 될 게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비용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볼 테니 제 장례를 치러줄 수 있나요?"

[사례 9] 가족과 단절된 60대 남성

2019년 6월 '53년생 어르신이 나눔과나눔 사무실에 본인의 장례를 해줄 수 있냐며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왔다. 어르신이 가장 궁금한 주요 내용은 본인은 결혼도 하지 않아 직계가족도 없고 가족과의 불화로 죽으면 반드시 무연고사망자가 될 테니 나눔과나눔이 책임지고 본인의 장례를 치러 줄 수 있느냐가 제일 궁금한 점이었다. 어르신께 현재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왜 안 되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한참을 말씀하셨다.

[사례 10] IMF 사업실패 후 가족에게 절대 연락 가지 않도록 부탁하는 80대 남성

나눔과나눔이 장례를 지원하기로 약속드린 80대 남성분은 부모님이 어린 시절 돌아가셔서 형님과 누나의 도움을 성장했다. 성인이 되어 연예·방송·패션계에서 활동했으나 IMF 사태 발생으로 사업에 실패하면서 노숙자가 되었고 지금은 수급자로 종로구 창신동 작은 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 이후 마음의 깊은 상처로 우울증이 악화하여 고통 속에 살면서 고독사가 걱정되어 대학병원에 시신을 기증하고자 했지만 역시 연고자 문제로 시신조차 기증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는 본인이 죽은 다음에 절대로 가족에게 사망 사실을 알려지지 않고 나눔과나눔이 장례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실을 종로구청장에게 우편으로 호소까지 하기도 했다. 그리고 수급비를 모아서 장례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상담 및 문의 전화 사례에 보는 바와 같이 직계가족이 없는 그리고 가족과 단절될 경우 장례 등의 사후사무가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무연고사망자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본인이 어느 정도의 비용은 부담할 수 있으니 본인의 장례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분들에게 명시적으로 장례를 약속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3. 결론 및 제언

1년에 2,000명이 넘는 무연고사망자들이 평균 수명보다 20년이나 일찍 이른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연고자가 없거나 시신을 위임했다는 이유로 오직 위생적이고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한 '처리'와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제대로 애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무연고사망자의 사후자기결정권적 측면에서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립사와 무연고사망자의 문제는 한국의 20여 년 전인 1997년 한국경제 위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단시일 내에 몇 가지 법률과 정책으로 쉽게 변화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의 흐름을 만들고 사회문화를 조성하느냐가 중요하다. 결국, 변화의 흐름은 실증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부 정책도 중요하며 아울러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문화의 변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혹은 과거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차원이 아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서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크게는 돈과 남성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양극화 해소, 공동체 회복 등 비자발적 고독생(孤獨生)을 양산하는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고립사와 무연고사망자 문제는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와 얽혀 있다. 그래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가야 한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다음의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 체계적인 무연고사망자 통계 관리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연고사망자 통계관리가 중요하다. 현재 해마다 무연고사망자 통계자료가 발표되고는 있지만, 발표 자료는 무연고사망자가 규모와 지역별·성별·연령별 통계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는 무연고사망자의 추이와 대표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부분까지 분석되어야 한다. 무연고사망자의 대부분은 고독생을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무연고사망자의 생전 주거지 통계자료가 중요하다. 서울시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나눔과나눔의 자료를 분

석해보면 고시원·쪽방·여관 등 비주거지에서 생활했던 홈리스가 약 45%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무연고사망자 예방대책으로 이들의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비주거지 지원 대책을 마련할 때 무연고사망자 예방대책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고립사와 무연고사망자 통계를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돌아가시지 않는 주거지·거리 등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구체적인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주거지·거리 등 돌아가신 분들의 사인과 현장 상황 등을 자료화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러한 업무매뉴얼을 통해 경찰의 초기 수사단계에서 고립사에 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고립사 통계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에서 고립사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기초적인 무연고사망자와 고립사에 대한 통계가 구축되었을 때 이를 바탕으로 예산이 마련되면서 종합적인 정책과 대책이 수립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종합적 분석을 위해 무연고사망자의 심리부검 등의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해마다 증가하는 무연고사망자와 고립사, 이들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통계 관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해낼 때 구체적인 예방과 대책이 가능하다.

나. 사회적 고립예방 대책 마련

영국에서는 2018년 1월 17일 테레사 메이 총리의 발표를 통해서 고독 담당 장관(Ministerfor loneliness)을 신설했다. 영국 사회는 2017년 설립된 조콕스 외로움문제대책위원회(Jo Cox LonelinessCommission)의 보고서를 주목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고독은 개인적인 불행에서 사회적인 유행병(Epidemic)으로 확산되었다고 발표했다. 고독의 위기는 복지정책의 한계를 나타냈고 따라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외로움과 고립의 사회적 문제와 공공의 접근 방법'이라는 연구를 진행하고 2018년 11월에 토론회를 진행했다. 경기복지재단도 최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립된 사람들은 보건·복지·정신·임대주택·학대상담·가족상담·금융상담·일자리안내·직업훈련·일상생활관리·도시환경개선(걸을 수 있는 환경과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고립의 문제의 해법을 각 영역에서 해결하기보다는 고립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도시와 복지서비스 기반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송인주, 2018).

다. 탈상품화된 공영장례 제도 마련

현재 많은 정책은 고립사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방도 중요하다. 하지만 예방 정책과 함께 현재 예비 고립사와 예비 무연고사망자라고 할 수 있는 홈리스, 홀몸어르신 등에게 공영장례를 제공하여 삶의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사후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보다 빠른 방법일 수 있다. 즉, 당사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을 때 공공에서 최소한의 장례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삶의 마지막 불안을 제거하는 정책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은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시장 의존성을 얼마나 줄이느냐, 즉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탈상품화란, 탈시장화라고도 한다. 즉,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소비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을 통해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급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질에 격차가 발생한다. 그런 점에서 복지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고 집단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의 탈시장화와 탈상품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장례도 복시서비스로 탈상품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으로서, 공공에서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제도가 필요하다. 여기서 공영장례란, 연고자가 없는 사람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장례절차 없이 안치실에

서 화장장으로 바로 가는 무빈소 직장(直葬) 방식이 아닌 최소한 가족과 지인 그리고 사회와 이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공공이 마련해서 최소한의 장례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장례는 죽은 사람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그 기본적 의미가 있다. 아울러 장례의 또 다른 의미는 다른 가족과 지인들이 돌아가신 망자와의 감정을 정리하고 이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함께 살아가며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던 희로애락의 그 숱한 시간을 회상하며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화해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재정적 이유로 장례가 생략된다면 살아 있는 가족에게는 평생 풀지 못하는 숙제가 남게 된다. 결국 이것이 사회적 불안이 되고 사회적 비용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권리적 차원에서 공공에서 최소한의 가족과 이별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라. 공영장례를 운영하는 공공의 컨트롤 타워 구축

탈상품화의 관점에서 공영장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영장례를 운영할 공공(公共)에서 직접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 독거노인문제가 심각해지자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복지관 및 노인지원기관을 통합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는 민관협력의 협치가 중요시되고 있다.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장례상담부터 네트워크를 연결해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공영장례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현재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법」에서 규정한 고독사예방센터가 좋은 입법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 사회적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

죽음은 개인의 문제다. 하지만 무연고사망자는 사회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어차피 죽은 사람, 가족마저도 시신을 포기한 사람, 게다가 가족도 아닌 모르는 사람이라면 굳이 공영장례를 통해 장례를 할 필요가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 죽음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신사회 위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죽음은 사회적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탈상품화의 관점에서 장례를 볼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권리적 관점에서 개인이 어떻게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지, 사후 자기결정권은 어떻게 보장할지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이 동반될 때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간디는 "사람들이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나라가 위대한 나라인지 (아니면 형편없는 나라인지), 그 국민의 도덕 수준이 어떤 수준에 도달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죽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회가 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다" 즉, 죽은 사람을 존엄하게 잘 보내는 사회라면 살아 있는 사람의 존엄함을 잘 지켜줄 것이다.

바. '가족 대신 장례'와 '내 뜻대로 장례'를 위한 법률 제·개정

혈연과 제도를 넘어 동행의 관계 가기 위해서는 '가족 대신 장례'와 '내 뜻대로 장례'가 보장될 수 있는 법률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당사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 혈연 중심의 가족에게만 장례 등의 사후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고자 적용의 우선순위와 적용 범위가 개정되어야 한다. 연고자 범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장례 등의 사후사무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삶의 동반자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장례 등의 사후사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사전에 장례 등의 사후사무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후사무의 최종단계로 사망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민법의 개정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과 법과 제도가 유사한 일본에서는 한국의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생활보호법」제18조 상제부조[9]를 적용하는 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이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생활보호법」의 피보호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죽은 자의 장제를 실시해야 하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만, 그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제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조사를 거쳐 제18조제1항을 적용한다. 둘째, 「생활보호법」의 피보호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죽은 자의 장제를 실시해야 하는 부양의무자가 없고 그 장제를 제삼자가 행하는 경우 제18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며 셋째, 피보호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 죽은 사람의 장제를 지내야 할 부양의무자가 없고, 동시에 그 사망자가 남긴 금품에 의해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채우지 못하며, 그 장례를 제삼자가 행하는 경우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한다.

[그림 6] 「생활보호법」적용(東京都保健福祉局, 2017: 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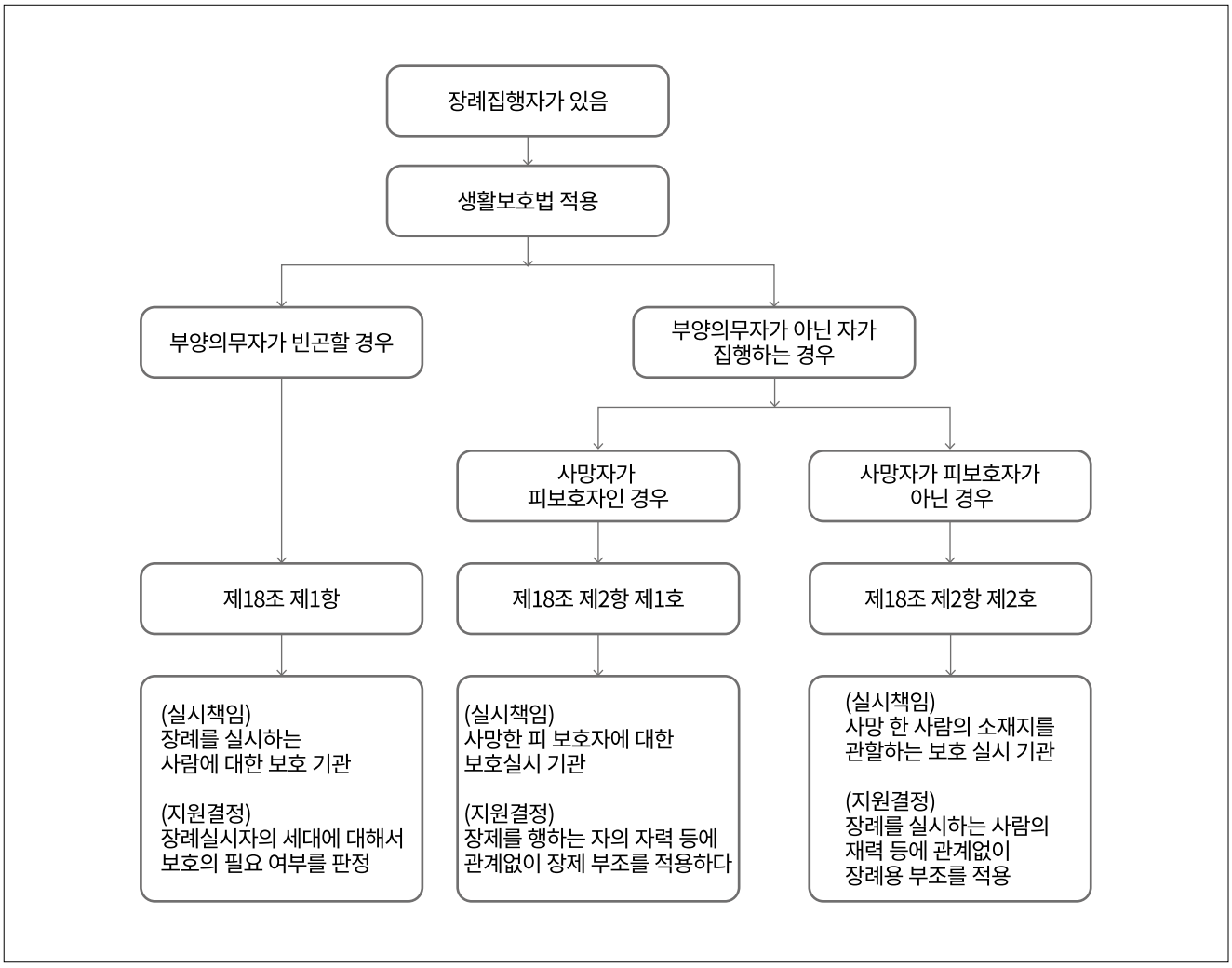

9) **「생활보호법」**

제18조 1 상제부조(葬祭扶助)는 곤궁에 의해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좌측에 제시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행한다.

一 검안

二 사체의 운반

三 화장 또는 매장(埋葬

四 납골, 그 외의 상제를 위해 필요한 것

2 좌측에 제시한 경우에 있어, 그 상제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 전항각호의 상제부조를 행할 수 있다.

一 피보호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 그 사람의 상제를 행하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二 사망자에 대해 그 상제를 행하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 유류된 금품으로 상제를 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가족이 시신인수를 하지 않을 때, 최소한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인이 살고 있던 지방자치단체가 그 실시 책임을 지고 장례를 할 수 있도록 장제급여를 지급한다는 의미다. 이와 같이 장례를 치르겠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굳이 국가가 나서서 망자를 무연고사망자로 시신을 '처리'해야 할 이유는 없다. 2015년 이후 1인 가구가 한국의 주된 유형의 가구가 되었다.[10] 그래서 더는 혈연의 가족에게 죽음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시대와 상황이 변하고 있다면 법·제도도 함께 시대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가족 대신 장례'를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8), 『2018년도 장사업무 안내』

성유진·이수진·오소영(2017), 『남자 혼자 죽다』, 파주: 생각하는 힘.

송인주(2018), 『고독사 위험 고립가구 특성과 지원모형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정은주·정봉현(2017), "고립사와 사회적 배제에 관한 도시 공간적 접근", 『도시행정학보』, 30(2): 131-152.

통계청(2017), "2016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東京都保健福祉局(2017), 『生活報告運用事例集』, 東京: 東京道廳.

인터넷 자료

송영규(2017), "서울 무연고주검 100건중 96건은 가족도 외면했다", 『서울경제』(9월 13일: 9),
<https://www.sedaily.com/NewsView/1OL0GIZ6NP(2019.3.10.검색)>.

이택현(2018), "지난해 고독사 2000명 넘어섰다...65세 이상이 40%", 『국민일보』(2월 19일: 1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03120(2019.3.10.검색)>.

10) 2016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통계청, 2019.3.20.검색)

발제2.

한국의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법제 검토 및 입법제안

양희철 |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

현대 사회의 도래는 공동체 구성과 관련해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한 핵가족화를 가져왔는데, 이제는 핵가족화를 넘어 1인 가구[1]가 우리 사회 가구 구성의 최대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까지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비율 증가는 가족 간의 유대관계 약화와 가족 개개인의 개인주의적 성향의 영향도 있겠으나 경제력 악화라는 원인으로부터 사회적 고립이라는 결과를 배태하는 데 보다 용이한 진행과정을 보인다는 점에서 고립사 및 무연고사망자와도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적 결과물인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등 사후사무와 관련하여 현행 법제를 검토하고 향후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1. 헌법상 기본권 검토

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개념 및 근거

헌법 제34조 제1항, 제4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고립사 및 무연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취약계층의 고립사 및 무연사는 경제적 빈곤이 원인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충족된다면 고립사 및 무연사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고립사 및 무연사를 막기 위해 재정능력의 범위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2]

나.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1) 개념 및 근거

헌법 제10조 2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함께 경제적 빈곤이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에게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2) 고립사와 무연사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국가는 고립사와 무연사가 발생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기본권 보장 수준이 너무 낮아 사회적·경제적 생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국가의 재정규모를 고려하되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급부를 하여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3]

---

1) 일본에서는 우리의 1인 가구를 '단신세대'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2) 이상명, '고독사에 대한 법적 고찰' - 노인 고독사에 대한 법사회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제16집 제4호, 2016. 12., 69, 70면

3) 위 논문, 72면

다. 사후자기결정권

1) 개념 및 근거

헌법상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의 일정한 사적 사안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그 근거를 헌법 제10조 1문의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에서 구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기존에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헌법 제10조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2) 사후 자기결정권 인정 여부 논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헌법상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데 위와 같은 권리가 개인의 생존 시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후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의미 있는 결정을 하였는데,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본문이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형제들과 30여 년간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연고가 없는 청구인의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3)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2헌마940 결정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사인 조사와 병리학적·해부학적 연구의 기초가 되는 해부용 시체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한다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시신 자체의 제공과 구별되는 장기나 인체조직에 있어서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이식·채취될 수 없도록 규정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인이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였고, 실제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사후 자신의 시체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공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4) 사후 자기결정권의 인정 가능성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눈여겨 볼 점은 바로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만일 자신의 사후에 시체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한다면 기본권 주체인 살아있는 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이다.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은 자연인의 경우 살아있는 자를 그 대상 범위로 하는데, 개인이 생전에 사후를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라도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바.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인정해오던 자연인의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자신의 사후 설계에 대한 자기결정권까지 확대하여 인정한 것이라 보인다. 이에 따라 고립사 또는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생전에 사후 설계를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그 사후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사후 자기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국가는 자기결정권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사후를 설계하는 사후 자기결정권 역시 인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개인이 자

신의 사후에 자신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가는 기본권 보장의무가 있으므로 개인이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이 생전에 그러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성적 개인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했을 것인지 고려해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실 이렇게 개인이 자신의 사후를 설계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유언이라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고, 이외에도 최근 전면 개정된 후견제도 및 신탁법 등을 통해서도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인다. 만일, 그런 사전적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법이 그 공백을 보충해야 할 것이다.

2. 사후자기결정권의 현행 법제 검토

가.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된 경우

1) 유언

민법 제1093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101조는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폭넓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생전에 유언집행자 지정을 통해 비록 법정 유언사항은 아니어서 법적으로 그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자신의 의사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둠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의지대로 장례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탁제도

가) 유언대용신탁의 활용

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미리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는 자신이 사망 시에 지정한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면서 자신이 신탁한 재산으로 자신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위탁자는 만일 장례 비용을 제하고도 신탁재산이 남는 경우라면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 운용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한다.

다) 공익신탁제도 활용

공익신탁법 제4조의 인가요건을 갖추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공익신탁을 운용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신탁재산 운용과 함께 신탁재산 운용에 부수하는 필요한 행위로써 위탁자의 의사에 따른 장례지원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에는 특별지원신탁회사(The Special Needs Trust Co, 약칭 'SNTC')가 존재하는데 위 법인은 싱가포르 유일의 비영리 신탁회사로 정부 사회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법무, 의료, 재정 분야 전문가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공적수탁인과 제휴관계를 체결하고 있다.[4)]

3) 사후사무위임계약

가) 사후사무위임계약의 개념

사후사무위임계약이란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계약으로 위임인의 사망 후에 비로소 수임인이 계약상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인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후사무위임이란 계약 유형도 자유로이 창설할 수 있으나, 우리 민법이 위임인의 사망을 위임종료 사유로 하고 있어 사후사무위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존재한다.[5)]

---

4) 에스더 탄(Esther Tan),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특별지원신탁회사', 한국성년후견학회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 2015. 12. 11. 자료집 195면

5) 송영민, '사후사무위임계약의 유효성과 당사자의 해제권 – 일본에서의 논의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2016. 8. 31.), 123, 124면

나) 사후사무 위임계약의 유효 여부

① 민법 제690조 및 제691조 논의

위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우리 민법 제690조는 위임인 사망 시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이 종료하고, 동법 제691조는 수임인은 긴급사무만 처리하되 그 경우 위임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위임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므로 위임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즉시 사무처리를 중단하면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6)]

② 사후사무 위임계약 유효성 관련 학설 대립

우리 학계는 민법 제690조 및 제691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한 의사가 우선한다고 보고, 일본의 학설도 일본 민법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해석해 위임인 사망 후에도 위임이 종료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가능하다고 본다.[7)]

사후사무위임계약은 위임인과 수임인이 위임계약 당시 상호 위임계약의 목적이 위임인의 사망 후 일정한 사무처리라는 점을 인식한 것이고, 위임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목적상 위임계약은 종료하지 않는다는 당사자의 합의(특약)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사무위임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8)]

③ 비교법적 고려

영국의 1985년 지속적대리권수여법(Enduring Powers of Attorney Act)은 사후사무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 유형을 정신보건법에 정의된 심신 상실상태 발생 이후 성년후견처럼 보호법원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임의후견과 같은 요건과 절차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9)] 즉, 영국에서도 전통적인 대리법에 따르면 유효한 권한의 수여 후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대리권이 소멸하여 제3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이다.[10)]

일본최고재판소 역시 1992년 9월 22일 平城4(오)67호 예탁금반환청구 등 사건에서 당사자 간 성립한 계약이 위임자의 사망에 의해 당연히 종료될 수 없는 임의계약이라고 판시하여 사후사무위임계약이 위임인의 사망 시에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해 존속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11)]

④ 검토

사후사무위임계약 자체의 유효성은 그 필요성 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다는 사적 자치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4)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계약

가) 성년후견제의 도입과 임의후견계약

우리 민법 제928조 이하는 성년에 달한 사람들에 대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기존의 금치산 등 제도는 권리능력의 제한이 과도하고, 획일적일 뿐 아니라 후견인에 의한 포괄적 의사결정대행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어 피후견인이 자신의 기본권

6) 위 논문, 125면

7) 위 논문, 123, 126면

8) 위 논문, 126, 127면

9) 백승흠, '고령자의 자기결정권 – 영국의 지속적대리권수여법을 중심으로-', 아·태공법연구(제4집), 135, 136면

10) 위 논문, 134, 135면

11) 부록 2. 일본 사후위임계약 관련 판례 참조

인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왔는데 이런 문제점을 완화하여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보호유형과 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12)]

또한, 이와 같이 새로 도입된 후견제도 중에는 임의후견제도 역시 포함되어 있어 기존과 달리 공정증서에 의한 후견계약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민법 제959조의14는 후견계약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한 후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 내용에 따라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나) 비교법적 검토

이미 살펴본 영국의 지속적대리권수여법도 일정 부분 임의후견계약의 성격을 갖는 것처럼 2007년 법률에 따라 신설된 프랑스의 장래보호위임계약도 장래 능력의 손상으로 더 이상 스스로 자신의 신상이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할 수 없을 경우 본인을 대리하기 위한 수임인을 선택하고, 위임할 업무 범위를 지정해 사서증서 또는 공정증서로 체결한다.[13)]이때 타인을 위한 위임계약은 공정증서로, 자신을 위한 위임계약은 사서증서 또는 공정증서로 하는데 이를 공시할 방법이 없어 거래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점과 장래보호위임계약의 효력 발생 시에는 후견법관이 개입하지 않아, 본인의 판단능력 정도나 위임계약 효력발생을 정당화할 사유를 평가할 방법이 없어 본인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이 비판받고 있다.[14)]

독일의 경우 기존에는 일시적 또는 지속적인 행위무능력 상태에 대비하여 사전에 자신의 권리를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사전적 전권위임(Vorsorgevollmacht)'을 통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정신적·신체적으로 쇠약해진 사람들 대부분이 일상생활을 영위했다. 이후 민법 제1896조 제2항 제2문에 성년후견 규정이 신설되면서 사전적 전권위임이 최초로 법에 규정되었다.[15)] 사전적 전권위임은 개인이 원하는 개별적인 욕구를 수임인에게 전달할 수 있고, 법원의 번거로운 개입에서 벗어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후견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생명의 위험이 따른 수술 등 치료나, 강제적 시설입소 및 재산문제를 제외하면 수임인의 사무처리에 법원의 승인이 필요 없어 수임인의 권리남용이나 횡령 등 가능성도 있다.[16)]

다) 일본의 임의후견계약의 실무와 계약 유형

① 장래형 임의후견계약

아직 본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되기 전에 재산관리, 신상감호 등 사무에 관해 위임계약 없이 임의후견계약만을 체결하여 자신의 판단능력이 저하될 경우 임의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로서, 임의후견계약법이 예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17)]

12) 박인환, '장애인권리협약과 의사결정지원의 제도화 모색', 한국성년후견학회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 2015. 12. 11. 자료집 57면

13) 김현진, '프랑스의 성년후견제도 – 장래보호위임계약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26권 1호, 96면,107, 108면

14) 위 논문 109, 110, 116면

15) 조성혜, '독일의 성년후견인 제도와 자기결정권', 법과 정책연구 제16집 제1호, 145, 146면

16) 위 논문, 146, 147면

17) 송영민, '사후사무위임계약의 유효성과 당사자의 해제권 – 일본에서의 논의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2016. 8. 31.), 159면

② 즉효형 임의후견계약

즉효형 임의후견계약은 즉시 임의후견이 시작되기 때문에 임의후견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 본인의 판단능력이 다소 불충분한 경우에도 계약체결을 위한 의사능력만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다.[18]

③ 이행형 임의후견계약

이행형 임의후견계약은 임의후견계약과 동시에 임의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해 처음에는 위임계약에 따라 본인의 재산관리 등을 하다가 본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되면 임의후견계약으로 이행해 후견사무를 행하는 계약이다. 이 경우 계약의 진정한 성립을 확인하고 장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정증서에 의해 위임계약과 임의후견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19]

④ 검토

일본에서는 장래형 임의후견계약 체결 시 본인의 판단능력 판단을 위해 월1회 연락, 연 1~2회 방문, 필요시 상담 및 적시에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신청 의무를 규정한 homelawyer계약을 함께 체결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므로 이러한 점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즉효형 임의후견계약은 판단능력이 문제되므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재산관리 등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20]

이행형 임의후견계약의 경우 우리 민법 제959조의14 제3항은 임의후견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가정법원에 의해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야 하는데 위임계약 수임인이 본인의 판단능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처리를 하는 등 남용 위험성이 있으므로, 본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되면 바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 청구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임의후견감독인의 대리권 범위는 일정 액수 이상의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위임인이나 친척 등의 서면 동의 또는 대리권 제한 등 조치로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21]

라) 사후사무를 위한 임의후견계약상 본인의 의사 실현 방법

① 임의후견계약상 본인의 의사 존중원칙

우리 민법 제681조는 임의후견인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959조의14 제4항은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임의후견계약의 특성상 임의후견인은 그 직무의 집행에 있어 본인의 의사 및 희망을 중시하여야 한다.[22]

만일, 본인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본인의 평소 언동 등으로부터 그 의사를 추측할 수 있지만, 자의적 추측은 피해야 하고, 영국에서 2005년 제정된 의사결정능력법의 원칙인 최선의 이익 확보가 본인의 의사 추측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무엇이 최선이 이익인지는 본인의 의사, 희망, 감정을 존중해야 하고,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지시하여 두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가능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상에 계약조항으로 기재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23] 이 경우 사후사무에 대하여도 위임인이 자신의 의사를 공정증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

18) 위 논문, 158면

19) 오호철, '일본의 임의후견계약의 유형에 따른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시사점', 법학연구 제52집 2013, 154면

20) 위 논문, 162면

21) 위 논문, 160, 161면

22) 위 논문, 99면

23) 위 논문, 100면

② 공정증서에 사후사무에 대한 본인 의사 기재하는 방식

일본의 경우 친척이 없는 본인이 자기의 사무에 필요한 사무를 임의후견인에 부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사후사무의 위임계약은 위임자의 사망에 의해 종료되지 않는 특약이 기재된 통상의 위임계약으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24] 따라서 공정증서에 위임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후 자신의 장례에 대해 결정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고, 위임인 사망 시 공정증서의 기재 내용대로 장례가 진행될 수 있다.[25]

마) 후견인의 사후사무 처리 가부

① 후견인의 사후사무 처리 근거

임의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인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는 후견인의 업무는 종료하게 된다. 즉, 피후견인과 관련된 권리·의무는 모두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고, 후견인이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무에 한하여만 종래 권한을 행사한다. 즉 우리 민법 제691조는 긴급처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관련 법정후견의 경우 동법 제940조의7, 959조의7, 959조의13이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위임계약의 일종인 임의후견에도 당연히 위 조문이 적용된다.[26]

만일, 피후견인 본인이 판단능력이 충분한 시점에 사망 후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정증서 등으로 사후사무위임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내용은 유효하고, 그 내용이 상속인의 긴급사무에 한정되는 것이라면 임의후견계약에 부수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27]

② 사후사무 처리 범위

위 긴급처분의 경우 위임자 등에게 사무인계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성이 있는 사무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인과의 이익상반·상속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필요·최소한으로 그쳐야 할 것이다.[28] 이 경우 사전에 사후사무에 관한 위임계약이나, 임의후견계약상 사후사무 위임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후견인은 상속인이 그 사무를 처리할 때까지만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을 보유하게 되어 상속인과 협의할 수 있다면 피후견인의 시신을 장례식장에 안치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급하는 사무, 사망진단서 발급사무 등을 처리해야 한다.[29]

반면, 위와 달리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후견인은 위임의 법리에 따라 긴급하게 필요한 사무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런 사무들에는 피후견인 명의 채무 변제, 공과금·세금 납부뿐 아니라 장례사무도 포함해 긴급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30]

바) 검토

피후견인이 사망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매·화장허가신고 및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85조는 사망신고를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족이 없는 피후견인의 경우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만이 할 수 있어 사망신고권자에 임의후견인을 포함한 성년후견인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31]

---

24) 위 논문 110, 111면

25) 위 논문 111면

26) 김은효, 성년후견제도의 개관, 대한변호사협회 2016년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자료집, 2016.11.5., 25면

27) 위 책 25면

28) 위 책, 24면

29) 서울지방변호사회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2018. 4. 123면

30) 위 책, 124면

31) 위 책, 27면

또한, 장례는 사회통념상 사람이 죽었을 때 최소한 보장되어야 하는 행위이고, 그 특성상 비용이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지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여지가 크며, 사후 단기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간 미룰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32] 임의후견인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긴급사무로서, 상속인이 있더라도 임의후견계약상 사후사무에 관한 조항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례 등 사후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법률관계

1) 공영장례 관련 법령

가) 노인복지법

현행 「노인복지법」 제27조의2는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 및 보호조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지 않고 있다.[33]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공영장례와 관련한 내용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사업의 형태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방식만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최근 고립사하는 계층이 비단 노인만이 아닌 청장년층까지도 확대되고 있어 노인복지법에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조 제16호에 따라 배우자, 자녀 등 선순위 연고자가 권리·의무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순위 연고자들이 시신인수를 거부하여 무연고자로 처리되는 경우 후순위 연고자들 또는 망인의 사실혼 관계 등 사실상 선순위 연고자들보다 더욱 밀접한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로 하여금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근거가 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2) 공영장례 관련 조례

가) 신안군의 최초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기타 지자체 사례

한국에서는 2007년 신안군에서 최초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래 2014년 광주광역시의 각 구를 비롯해 대전광역시 자치구에도 조례가 제정되었다.

나)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제정 및 내용

서울특별시는 2018. 3. 22.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여 같은 해 9. 23.부터 시행·운영하게 되었다.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제6조 제1호는 무연고사망자를 지원대상자로 하는데 이때 문제는 위 연고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공영장례 조례에 따른 장례절차도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법률이 규정하는 연고자의 순위에 따른 결정권에 좌우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위 공영장례 조례 제6조 제3호는 2018. 1. 4. 제정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의 고립사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조례는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고립사를 포괄하지도 못하고 있다.

---

32) 위 책, 29면

33) 이상명, '고독사에 대한 법적 고찰 - 노인 고독사에 대한 법사회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제16집 제4호 2016. 12. 79면

3) 현행 법령과 조례의 한계

현행 노인복지법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당사자의 추정적 의사를 실현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 따르면 동법의 제정 목적이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사의 대상이 된 개인을 보건 위생상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객체화시키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주체가 아닌 장례의 객체에 불과한 대상이 생전에 자신의 사후 장례를 어떻게 계획하였을지 그 의사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보건 위생상 편의를 염두에 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연고자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무연고' 여부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례의 제·개정만으로는 고립사 또는 무연고사망자 개인의 사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3. 향후 입법 및 정책 방향 제안

가. 고립사 및 무연고사망자 관련 법률 발의안 및 개정안

1)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가)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844호)

위 발의안은 2017. 8. 29. 기동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여 계류 중으로 제안이유로 "고립사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고립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은 물론 발생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고립사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되고도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실행은 요원할 뿐 아니라 최근 1인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형태로 올라섰지만,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보건복지 정책도 부족하여, 이에 고립사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조사와 대책 수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라 밝히고 있다.

나) 고독사 예방법(의안번호 제9759호)

위 발의안은 2017. 9. 29. 김승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여 계류 중인데 제안이유로 "고립사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립사 현황을 파악하고, 고립사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하며, 고립사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2)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028호)

위 법률안은 2017. 7. 17. 권미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계류 중으로 제안이유로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시신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재산관리에 관해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절차에 따라 사망자의 재산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연고자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검사도 소극적이어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검사에게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면 검사가 반드시 선임청구를 하여 무연고사망자의 재산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나) 노인복지법 개정안

①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565호)

현행 노인복지법에 독거노인의 실태와 서비스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종합적인 추진 시책이 없고, 홀로 사는 노인의 고립사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노인 고립사의 예방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실태를 조사 및 지원하고, 고립사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②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667호)

위 김해영 의원 안과 유사하게 고립사 위험이 높은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지자체장의 고립사 위험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 지자체장의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고립사 노인의 연고자 부존재 또는 미확인시 지자체장의 장례 대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발안의 및 개정안의 한계

가) 고립사 예방법 발의안 관련

현재 발의된 고립사 관련 발안의 모두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고립사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립사 현황을 파악하고, 고립사 발생 시 대응 및 필요한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고립사의 대부분의 경우는 무연고사망자로 시신이 화장되는데, 가족이 있지만 단절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인들도 이러한 현실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고독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관계망의 구축과 함께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사후자기결정권'의 보장에 있다. 하지만 두 발의안 모두 이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고립사의 정의에 있어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정한 시간'이란 며칠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두 발의안 모두 3년 또는 5년마다 고립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립사를 정의하기 위한 발견시점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법으로 어떻게 실태조사를 실시할지 의문이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위 법률안을 제외한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처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안들은 주로 장사시설 업체의 영업이나 위치와 관련한 개정안들이고, 위 법률안은 유일하게 연고가 없는 경우 그 사후 처리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상속인이 상속할 재산을 보호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아쉬운 점이 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연고 사망자가 자신의 장례와 관련하여 유언을 한 경우 재산관리를 처리해 줄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유언의 취지에 따라 장례가 진행될 여지가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현재처럼 시신을 포기한 경우 무빈소 직장(直葬)으로 처리되는 상황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 노인복지법 개정안 관련

김해영의원안 및 김우영의원안 모두 기존의 노인복지법보다 독거노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을 강구하는 방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타당한 방향이지만, 고립사 발생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김우영의원안의 경우도 여전히 고립사 발생 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장례를 대행할 권한을 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고립사한 독거노인과 밀접한 생활관계를 영위했던 사람들을 장례 대행과 관련해 배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나. 향후 입법 등 개선 방향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

가) 가족 중심 장례 문화의 변화

전통적인 대가족 체제에서는 장사가 가족의 문제였고, 장례 역시 그러한 가족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들어와 핵가족이 주류를 이루고, 최근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망인의 장례를 주도할 가

족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장례를 더 이상 단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 되었다.

나) 장례의 공공성 반영 필요성

현재 시점에 이르러 장례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과제로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장례 절차는 개인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의 삶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재인식과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한 각성의 계기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장례를 사망한 망인이나, 망인의 가족을 비롯해 망인과의 인연을 유지해왔던 지인들에게는 반드시 망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까지도 돌아보는 더욱 성숙한 개인과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고립사 또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는 한 개인이 이러한 죽음에 이르게 된 개인의 삶의 과정에 대한 공동체 전체의 반성과 그 대책 마련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영리적 부분이 만연해 있는 현 장례절차와 대비되는 공공성 반영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연고자 규정 개정 필요성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는 '연고자'를 정의하면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망인과의 관계에 권리·의무 행사의 순서를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망인이 동법에 규정된 법적인 관계가 단절되었었거나, 그러한 법적 관계 외에 실질적으로 더욱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있는 경우 예외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 이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선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서와 무관하게 연고자 범위에 있는 누구든 시신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둘째, 망인과 법적인 연고자 관계가 아니라도, 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망인과의 법적 관계에서 선순위인 자가 연고자로서의 권리를 포기 또는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실질적 생활관계가 있었던 삶의 동반자가 장례를 희망한다면 관할 관청의 책임 하에 장례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즉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실질적 사후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실질적 사후자기결정권은 현재의 법률로도 보장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아목에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또한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담당 공무원이 해석에 의해 혈연의 연고자는 아니지만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로 인정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책임 문제가 있기에 재량권을 발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현장에서도 아목의 규정을 근거로 연고자가 아닌 자가 장례를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밖에 없다. 결국 실질적으로 사후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 규정보다는 실질적 생활관계가 관할 관청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를 들면서 일반규정을 넣어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혹 범죄에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현재 법 상황에서도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장례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2) 향후 포괄적 고립사와 무연사 대응 법률 제정의 필요성

가) 고립사와 무연사 상황 변화

고립사와 무연사가 더 이상 예전처럼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중년층 및 노년층을 아우르는 현상이 되어 가면서, 우리 사회의 고립사와 무연사에 대한 대응에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즉, 고립사와 무연사가 비혼, 미혼 및 평균 수명의 증가로 늘어가는 1인가구의 피할 수 없는 결과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장례를 공동체 전체의 것으로, 고립사와 무연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나) 개별 법령 개정의 한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만 고립사와 무연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립사와 무연사를

규율하는 규범 역시 연령·지역·성별 등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도 일정 부분 당사자의 추정적 의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지만, 그 목적부터 다른 망인의 사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포괄적 고립사와 무연사 대응 법령은 기존 장사 등에 관한 법령이 다루지 못하는 고립사와 무연사에 대한 내용까지 다뤄야 할 것이다.

다) 사후자기결정권의 반영

고립사와 무연사에 대응하는 포괄적 대응 법률 제정 시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삶을 마감한 망인도 존엄한 인간이었고, 그러한 존엄성에서 유래한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최근 시행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제1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즉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과 이들이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포괄적 고립사와 무연사의 대응 법률에는 만일 당사자의 장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만일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 경우는 당사자의 추정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의 수집 및 검토까지 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망인의 사후자기결정권이 최소한도로나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발제3.

자기결정에 의한 계약가족 만들기 활동
-생전계약 프로그램 실천사례-

마츠시마 뇨카이 | 일본 LISS 대표

1. 죽음의 자기결정 프로그램의 원점으로서의 '모야이의 비'

우리들의 활동은 무덤(묘소)의 자기결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주로 여성활동가에 의해 "여자 혼자에게는 무덤을 팔지 않는다"라는 무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1990년에 시작한 '모야이의 비'이다. 이 묘소는 인권문제에 생애를 바친 동양대학학장을 지내신 고(故) 이소무라 에이이치(磯村英一) 선생의 교시를 받들어, 내가 운영하는 스가모 평화영원(동경도 스가모)내에 건립한 것으로, 일본 합장묘지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존재가 된 묘이다.

모야이의 비라고 하는 묘소에 납골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자기결정을 해서 모야이의 모임에 가입하는 것이 조건이다. 그 외에 종교, 종파, 민족, 국적, 가문, 성별 등에서 일절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모야이의 비는 건립한 지 30여 년이 되었으며, 납골되어 있는 회원은 2803명, 사후에 이 묘소에 들어가는 것으로 약속한 회원은 3037명이다.

현재 생존 회원 수는 피크 때에 3600명이었으나, 신규가입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상황이다. 모야이의 비는 내가 건립한 스가모 평화영원의 설치 모체인 '공덕원동경별원'이 계속해서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회원이 감소하더라도 묘를 계속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

2. 계약가족 만들기로서의 생전계약을 향하여

인간의 욕망보다는, 걱정에 끝이 없다. 묘소 문제가 해결되어 안심이 되면, 그 다음에는 묘에 들어가기 위해 화장과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다.

즉 '부처를 만들고 혼을 집어넣지 않는다'(완성해 놓고도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다)라는 격언이 의미하는 상황과도 같은 것이다. "절이 되든 모야이의 회가 되든, 묘에 들어갈 때까지, 말하자면 사후 사무를 해주는 조직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고 모야이의 회원으로부터 강한 요망이 나타났다.

나는 이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다. 그러나 800-1200도에서 화장한 뼈는 상하지 않지만, 시신은 시시각각 부패해 간다. 타인을 화장하거나 납골하는 것을 타인이 상주가 되어 생하는 것이, 일본의 법률로 인정될 것인가. 기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 2-3년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일본에서는 상주는 아들, 배우자 등으로 결정되어 있다. 타인이 상주가 되는 것에 대해 법률, 즉 민법제897조에서, 망자 본인이 생전에 누군가를(타인이라도 좋음) 상주(제사를 주제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해 둔다면, 그 지정된 자가 상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별히 정해진 지정 방식은 없었으므로, 우리들은 공정증서의 유언에 의한 것으로 하도록 하였다.

3. 상주로서 행한 일의 대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주로서 일을 하는 자격을 얻고 일을 했으나, 그 대금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다음 과제가 되었다.
자기결정은 자기책임으로부터 실현된다. 이를 위해서는 망자 본인이 일을 한 사람에게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것도 통상은 상속인이 상주가 되어, 상속한 유산 등으로부터 장례비를 내고 있다. 일을 하는 측은 선불로 지급받는 것이 좋지만, 지불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일을 하는 것은 본인이 죽고 난 뒤이다. 돈을 지불해도 정말로 일을 해주는지 그렇지 않는지 걱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널리 알려지지 않는 것일 테다.
민법제1002조에는 '사후 부탁받은 일(부담[負担])을 해주면, 재산을 준다(유증)'라고 하는 '부담부유증'(負担付遺贈) 규정이 있다. 이것은 유언에 쓰여 있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는다. 상주가 되어 장례, 회장, 납골을 할 수 있고 돈은 유언에 부담부증여를 한다고 쓰게 된다면, 일을 하는 쪽에서도 걱정 없이 돈을 지불받을 수 있다. 이것으로 큰 틀은 완성되었다.

4. 사회관계의 청산(淸算)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신병의 시말에 대해 타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할 수 있었으나, 사람이 죽으면 건강보험이나 공적연금, 개호보험들의 자격상실 서류, 살고 있는 방의 정리 등 불필요한 물품의 처분, 임대한 주택이나 공영주택이라면 집주인에 대한 반환 수속 등의 일, 공공요금의 납부,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큰 문제가 된다.
이러한 일들은 망자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지 않고 마음대로는 할 수 없다. 민법653조는 "위임계약은 위임자 또는 수임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곤란하다'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되면 '하늘의 지혜'가 생긴다고는 말할 수밖에 없는데, 마침 최고재판소가 민법653조의 해석에 대해 훌륭한 판결을 내 주었다. 이 판결을 가지고 모든 위임계약이 사후 유효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한 학자도 있었지만, 적어도 생전계약 26년의 역사에서 쟁의가 발생한 것은 1건도 없었다.

5. 생전계약을 세상에 알리다

이와 같이, 자기책임에 의해 자기결정을 모두 하는 것을 서포트 할 수 있는 체제의 명칭을 'Living Support Service (Liss) 시스템', 정식명칭은 '리스시스템'이라고 해서, 1993년 10월에 세상에 알렸다. 2000년 11월에는 NPO인증을 받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미디어는 크게 보도하고 그 반향도 컸으나, 1에 매스컴. 2에 장의업계, 그리고 3과 4가 없이, 5에 고객이라는 상황에서, 반향만큼 계약자가 늘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영원(靈苑)의 수입으로 지탱해 나갔다.
경영은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나아지지는 않았다. 계약자가 리스시스템에게 유증한다는 유언을 씀으로써 그 수입이 총 사업비의 60프로를 점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우리들은 NPO로서 생전계약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자의 부담을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고,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영 이념의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경영의 안정성, 영속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한 개선책을 현재에도 고민하고 있다.

6. 리스시스템의 현황

계약자 합계 6175명, 현재 유효계약자수 3815명, 사망자 1174명, 해약자 1172명(2019년 7월말 현재). 총 계약자수에 대해 현재 생존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는 건수는 3815명이다. 26년에 걸쳐서 사망자도 매일매일 증가하고 있지만, 계약 해제건수도 의외로 많다. 이것은 주로 친족이 인수받겠다고 하는 케이스이다. 자기 결정으로 계약 한 것이기 때문에, 해약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한 후에 진행하고 있다.
계약가족의 구조는 생전, 후견, 사후에 관해 5종류의 위임계약, 유언에 의하고 있다.

생전계약 기본계약서 생전 사무위임계약 공정증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 유언 공정증서 사후 사무위임 계약서

사후사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유언에 의한 부담부유증을 근거로 하여 시스템을 구축했으므로, 사후 사무위임계약은 유언이 단독행위(일방적인 의사표시)인 것을 보완하는 구조이다. 평균 수명이 여자 87세, 남자 82세가 된 현대에, 60세의 계약자가 사망하게 되는 시기는 앞으로 30년 정도 후의 일이기 때문이다.
‘30년 앞날의 일 따위를 먼저 정해서 뭐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나, 사람의 수명만큼 불확실한 것이 없어서,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는 일이다. 그 때문에 ‘내일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제로, 사후 사무는 본인이 기획서 등에 의해 설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0년 4월에 민법의 성년후견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 새롭게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도 동시에 시행되었다. 임의후견계약제도는 후견상태가 되어도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을 때(심신에 병이나 장애가 없을 시) 행한 자기결정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이다. 우리는 재빨리 이 제도를 계약가족의 구조에 넣어, 현재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3949건이다.
일본의 임의후견계약제도에서는 공정증서계약이 조건으로, 인지능력(사리의 변식)이 불충분하게 되었을 때, 의사의 진단에 의해 가정 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고, 감독인이 선임된 시점에서 발효한다는 것이다. 리스 시스템에서는 2002년 3월자로 임의후견계약의 수임을 시작하고, 올해 6월 말까지 계약 수임 수가 앞에서 제시한 대로이다. 감독인이 선임되어 계약이 발효된 건수가 89건, 현재 유효 건수가 39건, 50건은 사망 등이다.
우리는 후견 상태가 되어도 자기 결정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후견 사무 이행에 관한 사전 의사 표시서(후견노트)’인 의사 표시서를 만들어, 치매 등이 되었을 때의 생활 방식을 기재한 것을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후견사무이행의 수단으로 하고 있다(서식). 의료상의 판단에 관한 사전 의사표시서는 최근 일본에서도 보급되고 있지만, 후견상태가 되었을 때의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다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법과 인권

오쿠다 마사미치 | 전 최고재판소 판사 | 쿄토대학명예교수/일본학사원회원

‘법과 인권’ 이라는 주제로 강연 의뢰를 받고 그 취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 문득 눈에 띄었던 것이, NPO리스시스템의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일본 헌법에서 조차 망자에 대한 인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전계약은 망자의 존엄을 인정하고 지키고 싶다,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의 소망에 응하고 싶다는 생각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것을 20년 전부터 제기했다고 한다면, NPO리스시스템, 나아가서 창설자인 마츠시마 씨의 착안점은 획기적이고 훌륭한 것입니다. 법률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금까지 누구 한사람 ‘죽은 자의 인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원래 민법은 인간의 권리 능력에 대해서 ‘사권(私權)의 향유는 출생에서 비롯된다(제3조)’고 시작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예외로서 3개 분야에서 태아에게도 권리를 인정하고 있을 뿐으로, 권리능력의 종료 시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망시라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NPO리스시스템의 여러분은 사망 후에도 망자 본인의 인권이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폭넓게 논의되어야 할 아주 새로운 논점입니다.

‘망자의 인권’에 대해 생각할 때, 제대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망자의 재산권이 사망 시 상속이라는 형태로 해결되어 버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망자 본인의 인권’과 ‘유족의 인권’을 혼동하면 안 되고, 여기서 문제시해야 할 것은 ‘망자 본인의 인권’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강연은 ‘Ai 취급기사 양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망자의 인권’과 ‘사인의 명확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신체 정보에 대해서, 모두 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지방률은 얼마인가, 혈액형은 무엇인가, DNA감정에서 누구의 아이로 나왔는가 등, 알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라면 무엇이든 알 권리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제 병이 무엇입니까? 어떤 치료를 하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의사가 ‘아니오,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자신의 몸에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망자에게도 권리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병이라서 어떻게 사망하게 되는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는 유족이 ‘아버지는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이상한 일이다’라고 하여 유족의 입장이나 권리를 행사하여 사인을 조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유족이라고 해서 망자의 정보를 조사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망자의 권리를 유족이 대행하여 사용한다는 것인가, 라고 말한다면 이것도 현 시점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점이 현행 법률에서는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망자의 정보와 관련해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소설이나 주간지 등에서 있지도 않은 일을 썼을 경우, 이를 문제화한 유족이 작가나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 정지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누구의 권리로 소송을 하는 것일까요. 위족이 ‘아버지가 바보 취급을 당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본인이 ‘나를 바보 취급하지 말라’고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NPO리스시스템의 여러분은 후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자가 분노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살아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죽은 사람도 자기 자신을 안다, 즉 분명히 사인(死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발상입니다.

친족관계가 희박하거나 친족 그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더욱 늘어나고 있는 중, 의료사고 조사제도가 제도화되어 사인구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사인구명의 권리주체가 '유족의 권리'와 같이 애매한 형태로 처리되어 왔지만, NPO리스시스템으로부터 '망자의 권리'에 대한 파장을 일으킴으로써 제대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제4.

일본의 임종기 및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지원

히가쉬타니 유키마사 | 정신의료 국가 배상 청구 소송 연구회 대표

1. 임종기 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 지원

죽을 때까지 정든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노인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임종기를 병원에서 맞는 노인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의 대부분은, 재택 케어에 대한 지원 시스템의 부족과 재택 케어 인력 부족 및 가족에 대한 과대한 부담이다. 특히 지방의 개호인력 부족은 심각하고, 젊은 층 인력의 부족 때문에 외국인 개호근로자의 도입이 개시되고 있다. 케어워커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부족한 현상의 원인은 중노동에도 불구하고 개호보험 보수에 규정된 저임금과 사회적 지위의 낮음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희망하면 누구라도 간단하게 병원이나 노인 시설의 개호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있어, 담당자의 질 저하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노인 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에서의 학대에 의한 폭행이나 사망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수단은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이 있지만 노인이 임종기에 희망하는 의료에 관한 자기 결정은 보장되게 되었다. 대부분의 노인 시설이나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는 입소 시 인터뷰를 통해 임종기에 받을 연명치료와 소생술 등에 대한 희망을 듣고, 문장화하여 서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희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감안하여, 매년 희망의 변화를 듣고 관계자의 돌봄(케어) 회의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이전에는 문제가 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과잉 연명 조치나 소생의료가 이루어지는 것은 적어지게 되었다.

2. 임종기의 권리 옹호

일본의 노동 시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40퍼센트로, 저임금 노동자층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생 결혼하지 않거나, 가족을 갖게 되지 않는 층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신자가 늘면서 독신 노인의 비율도 계속 커지고 있다.

독신노인의 재산 측면에 대한 옹호에 관해서는, 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의한 금전관리 서비스나 후견인에 의한 재산보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후견인의 서비스는 유료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만이 활용할 수 있다.

재택의 독신노인에 대해서는 경비회사가 센서를 활용하여 안부를 확인하거나, 민생위원의 방문, 우체국이나 신문배달소 등의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한 지킴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장례식에 대한 지원

일본 사회에 있어서 장제는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장례식이나 결혼식을 하지 않거나, 아주 가까운 친척들만 모여 한정되게 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빈곤자 혹은 소외계층에 대한 장례지원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생활보호법에 의한 장례 부조: 지원금은 206,000엔 이내.
- 의료보험·국민보험의 사망 급여, 상제 부조: 50,000엔.
- 공무원이나 교원 등의 보험에서는 독자적으로 부가 급부를 마련하고 있다.
- 시민장: 지자체에서 장의사와 제휴하여 저렴한 장례를 제공하고 있다. 150,000엔 정도에서 간소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다.
- 행로병인 및 행로사망인 취급법: 여행자나 신원이 불명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지의 지차체가 책임을 지도록 정해져 있다.

4. 매장 지원

- 사망자의 보양 가족이 소지하는 묘지에 매장
-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 사원(寺院)등과 제휴하는 묘지에 매장
- 공립묘지·영원에 있는 공동묘지에 매장

생전에 본인이 어느 묘지에 들어갈지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에 따른다. 의사표시가 없으면 가족의 의향에 따른다. 의사표시가 없고 가족도 없다면 복지사무소 등 관계기관 또는 시설이 결정한다.

5. 과제: 계속되는 무연사회 안에서

현재의 일본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어, 지연혈연의 희박화, 프라이버시 보호의 엄격화, 종신고용 제도의 붕괴라는 상황이 겹쳐, 독신자는 더욱 고립되기 쉬운 구조가 되고 있다. 도쿄에서는 생애 미혼율이 30퍼센트를 넘어, 2030년대에는 일본 전체가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프리 아르바이터,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40퍼센트를 넘어섰다. 일본은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류에 속하는 한편, 연간 3만 명이 고독사하고 있다.

이러한 풍조를 배경으로, 이것을 비즈니스의 기회로 파악하여, 다양한 무연 비즈니스가 번성하고 있다. 현대 일본 사회 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효과적인 수단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연이나 혈연, 기업에 의존했던 공동체가 붕괴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상, 개인을 단위로 한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필자 개인으로서는, 한국의 KBS TV에 소개된 지역 통화(通貨)를 시도한 '생로병사의 비밀'이나, 국제적 기업, 자조그룹 등의 동료를 소중히 하면서,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적, 사적의 새로운 인연을 소중히 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며 실천하고 있다.

보충 자료

1. 일본 정신과 의료의 참상과 사망에 대하여

전 세계에 존재하는 정신과 침대의 20%, 300,000개가 일본에 있다. 기형적으로 그 수가 많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 질도 지극히 낮다.

OECD회원국의 평균 입원 일수는 20일 정도지만, 일본의 경우는 260일이다. 병이 나아도 퇴원할 수 없는 경우가 흔하고, 병원 경영상의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입원을 지속시키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만연하고 있다.

정신과 병원에서의 사망은 연간 18,000명에서 20,000명에 이르는데, 내과적 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평균 수명은 일본인 전체와 비교해서도 20년 짧다. 지역사회 안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을 돌보기 위한 사회적 자원도, 아웃리치에 의한 지역지원시스템도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엔 인권 문제 소위원회, WHO, ICJ(국제 법률가 위원회)등에서의 개선 권고나 비난 결의도 다수 나와 있지만, 개선의 조짐은 없다.

2. 정신 의료 국가 배상 소송의 현황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필자는 2012년부터 연구회를 조직, 언론인, 변호사, 장애인 본인, 가족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국가 배상 재판을 진행하고 왔다. 장기 입원을 강요당한 원고를 2013년부터 모집하여 왔는데 원고가 나타나지 않다가, 드디어 원고가 나타나 연말이나 내년에는 국가를 제소할 수 있게 되었다. 두 군데의 지방재판소에 제소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도 일본의 정신의료 정책이 열악하다는 것을 행정부는 인식하면서도,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해 오지 않았고,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의 책임을 일본 정부에게 물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재판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열악한 일본 정신의료를 크게 전환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3. 시설에서 사망했을 때의 장례의 실제

필자가 근무했던 사회복지법인의 구호시설은 생활보호법에 의해 만들어진 시설로, 입소자 모두가 생활보호 수급자이며 정신지체 장애인이다. 대부분이 수년에서 십수 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경험이 있다.

시설에는, 시설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의 급부와 시설 입소자에 대한 개인 급부가 국가로부터 각각 지불되고 있다. 입소자에 대한 개인 급부의 대부분은 일용품비로, 개인의 예탁통장은 시설이 맡아 두면서 매월 급부에 의해 통장에 입금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소에 신청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설측은 시설 입소자의 예금상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지만, 입소자 중에서는 시설이 관리하고 있는 예금통장과는 별도의 통장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예금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에 대한 전체 상황은 파악하기가 어렵다.

시설 입소자가 인접 병원이나 시설 내에서 사망한 때에는 본인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액을 어느 정도 예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 예금액의 액수가 큰 경우에는 유족과 상담하여 장례비용은 본인의 예금에서 지출한다. 남은 예금은 유족에게 돌려준다. 예금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원 주소지 관할 구·시·정·촌 복지사무소의 담당 케이스 워커에게 생활보호법에 의한 장제부조비를 신청하도록 요청하여, 장례와 매장 비용을 생활보호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에는 병원, 노인 시설, 타 시설과의 공유 냉암소(冷暗所)가 있다. 시설 입소자가 사망하면 명원 의사에 의해 사망진단서가 발행되어 영안실로 옮겨진다. 여기서 당일 통야(通夜: 하루 밤을 새는 것), 다음날 고별식·장례를 치른다. 친족이나 친구가 마지막을 함께하는데, 친족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에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도립 상제소(葬祭所)에 입회하는 경우, 시설 직원과 친했던 친구만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

통야, 고별식, 화장, 매장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도쿄복지회라는 법인이 맡아 주고 있다. 이 법인은 공동묘지를 가지고 있어, 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유골을 이 공동묘지에 매장하고 있다. 시설에 따라서는 근처의 사원과 제휴하여 사원 내에 전용 공동묘지를 가지고 있는 시설도 많다.

매장과 관련해서는, 개인 가족 묘지, 도립 공동묘지, 도쿄복지회의 공동묘지, 시설이 보유하는 사원과 제휴한 공동묘지 중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장하고 있다. 의사 표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유족의 의사를 따르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복지사무소의 담당 케이스 워커와 상담한 후에 매장장소를 결정하고 있다.

대만의 무연고사망자 문제 및 관련 규제

왕안기 王安琪(국립대만대학교 박사과정)
d04325002@ntu.edu.tw

사후자기결정권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2019년 9월 19일

1

왕안기(王安琪)

- 국립대만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후보자
- 연구 내용: 의료사회학, 과학, 기술과 사회(STS), 죽음과 죽어감(Death and Dying)
- 논문 주제: 의료진의 도움과 호스피스 케어 기술을 통하여 어떻게 "좋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가

2

개요

1. 사회학에서의 무연고사망자와 고독사
2. 대만의 무연고사망자 관련 규정
3. 친인척 없이 죽어가는 이들의 이야기

3

1. 사회학에서의 무연고사망자와 고독사

4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사회학적인 탐구

- 지난 20년간 사회학적인 탐구는 3줄로 정리할 수 있다(Riley 1983):
  -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자아(self) 및 죽어감(dying)
  - 사별(bereavement), 애도(grief),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상실(loss)의 의미
  - 죽어감과 죽음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규범과 사회적 구조

Riley Jr, John W. 1983. "Dying and the meanings of death: Sociological inquiri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9 (1):191-216.

5

- 죽어가는 과정과 유족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 기관 및 방안에 대한 수많은 연구
- 연구자들은 죽음을 마치 특별한 종류의 사회적 문제처럼 취급 (Riley 1983)
- 무연고사망자와 고독사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

6

무연고사망자

- UCLA 사회학과 교수이자 "사후: 검시관이 의문사를 설명하는 방법(Postmortem: How Medical Examiners Explain Suspicious Deaths)"의 저자 스테판 팀멀맨스(Stefan Timmermans)"
- 암스테르담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파멜라 프리켓(Pamela Prickett)

http://www.pamelajprickett.com/the-unclaimed.html
http://www.stefantimmermans.com/research

7

'그들이 여기 있었다는 증인: 로스엔젤레스는 1,457인의 무연고사망자를 기린다(A Witness That They Were Here: Los Angeles Honors 1,457 of Its Unclaimed Dead)'

https://www.nytimes.com/2018/12/07/us/los-angeles-dead-homeless.html

8

팀멀맨스 & 프리켓 프로젝트(Timmermans & Prickett's project)

- 매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부는 약 1600명의 유골을 한 개의 공동무덤에 매장하며 이들의 삶은 사망 년도로만 남겨진다.
- 누군가 사망했을 때 친족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 이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

이들은 세상에 어떠한 사회적 흔적을 남기고 떠났는가?

9

고독사에 대한 준비

- 동경대 사회학과 치즈노 우에노(Chizuko Ueno:上野千鶴子) 교수
- 누구나 혼자인 시대의 죽음(おひとりさまの最期, The last moment of one person)
- "혼자 죽어도 괜찮다"
- 죽음과 사후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

10

대만의 무연고사망자

- 2019년 법무부 산하 법의학연구소 인구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무연고사망자 사건은 3,000건
- 연 평균 393건 증가
- 이들 중 252건에 대하여 신분확인이 가능하였으며 141건은 신원불명으로 남아 있음

11

사후권리에 있어서 취약집단

- 노년층
-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7년도 노령인구 실태조사 보고서
  - 8.97% (289,000)의 노인(> 65세)이 혼자 살고 있음
  - 5.47% (183,000)의 노인(55-64세)이 혼자 살고 있음
- 정부는 지역사회 돌봄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이들 노령 인구를 추적하고자 함

12

사후자기결정권 취약 집단

- 홈리스 인구
- 보건복지부에는 연간 약 3000 명의 홈리스 등록(대부분 남성)
- 일부 자선단체가 이들을 위한 장례식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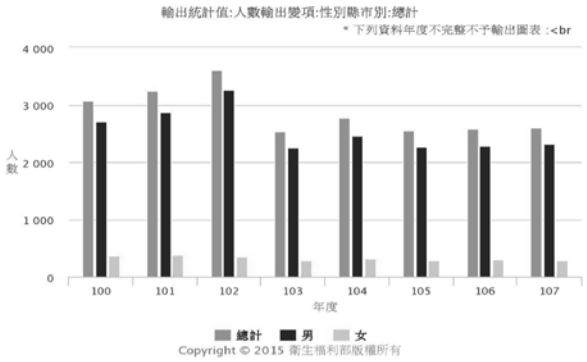

Copyright © 2015 衛生福利部版權所有

13

2. 대만의 무연고사망자 관련 규정

14

장례행정법

- 2002년 7월 17일 내무부에 의해 발표
- 본 법은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현대적 필요성의 준수를 촉진하는 한편 개인의 존엄성과 공익을 모두 고려한다(제1조)

https://mort.moi.gov.tw/frontsite/cms/serviceAction.do?method=viewContentDetail&iscancel=true&contentId=MjUxNg==

15

제 61조

- 성인 및 이에 상응하는 능력을 가진 개인은 살아있을 때 사후 장례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유서 또는 이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
- 장례절차를 담당하는 가족 또는 업체의 경우 전항에 명시된 사망자의 유언 또는 유언장을 존중하여야 한다.

16

제 69조-1

예상하지 못한 사건 또는 원인미상의 사망으로 인해 군 또는 경찰에서 법률에 따라 시신을 처리한 이후에는 해당 지역의 공공 장례식장에 시신의 운구 문제를 처리하도록 통지되며, 친족이 이미 시신을 인수한 경우 또는 기타 장례식장에 해당 사안이 위탁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무연고사망자 시신의 경우 인수 또는 기타 위탁 장례 절차가 불가하다.

17

제 69조-2

상기 통지를 받은 공공 장례식장은 직접 또는 다른 장례식장에 위탁함으로써 시신을 장례식장까지 운구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8

제 69조-3

- 상기 제 2항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또는 친족들로부터 시신 운구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상기 1항에서 언급된 시신 인수 친족이 없는 무연고사망자 시신의 자기결정권 사안은 관할 시 또는 구(country)에서 실시한다.

19

- 사망 후 보다는 사망 전과 관련된 법규가 더 많다. 호스피스 통증완화 치료 법이나 환자 자율권법 등이 그 예다. 이들 법률은 사전의료지시서(advanced directive, living will)를 합법화 함으로써 의학적 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보하고 있다.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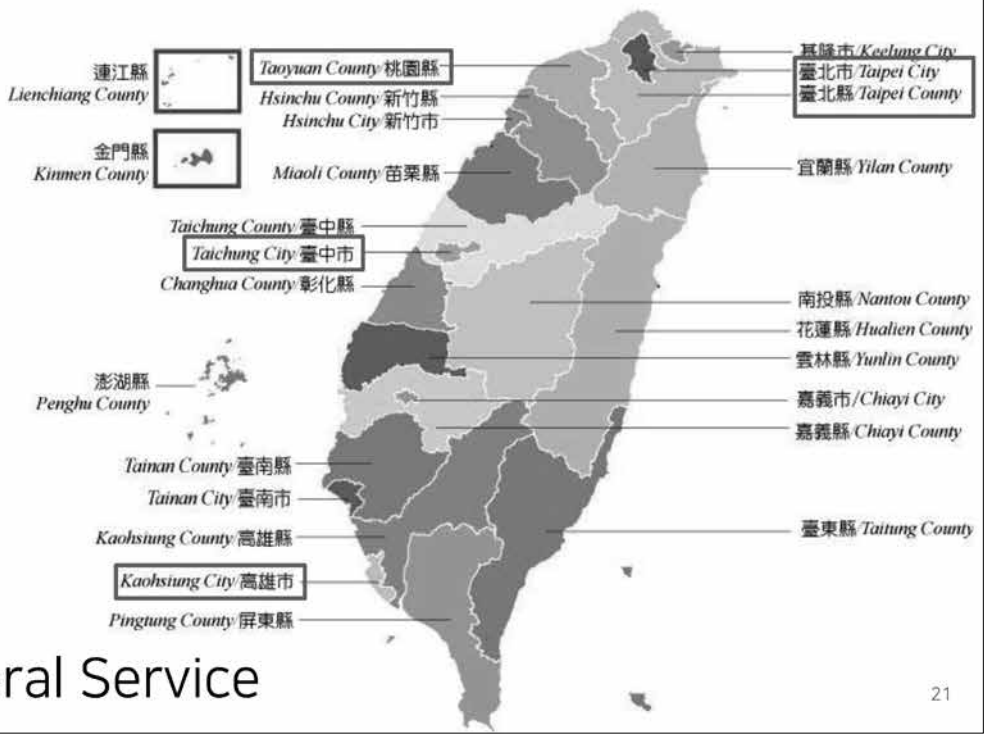

Public Funeral Service

21

공영장례

https://images.app.goo.gl/yfhZNeiw3NzHrtXx5

불교

22

기독교와 천주교

https://images.app.goo.gl/PBu2NBdki9reg1xF6

23

3. 친인척 없이 죽어가는 이들의 스토리

24

호스피스 병동의 사회복지사 사례

- 중년의 남성인 첸(가명)씨는 말기환자로 주변에 아무도 없음.
- 첸 씨는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30년전 가족을 떠났음
- 가족들에게 돌아가려고 했으나 여전히 용기가 없음

25

- 사회복지사는 복지부에서 첸 씨의 장례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나 첸 씨가 가족들에게 연락해 볼 것을 격려함.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망자를 위한 깨끗한 예복을 준비함. 첸 씨는 사회복지사에게 자신을 위해 실내복 한 벌을 준비해 줄 것을 부탁함.
- 첸 씨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평화롭게 작고함.

26

- 사회복지사는 첸 씨의 부인에게 그의 사망을 통지하고 첸 씨가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했음을 전달함.
- 부인은 자녀와 함께 영안실에 와서 첸 씨의 장례를 복지부에 맡기지 않고 가족들이 진행하기로 결정함.

27

결론

- 고독사와 무연고사망자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
- 장례행정법 및 사회기관을 통한 무연고사망자 관련 사안의 지원
- 그러나 여전히 대만 사회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및 이들의 사후권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

28

지정 토론

토론1.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한일비교 및 입법·정책 방안연구에 관한 토론문

송인주 |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나눔과 나눔에서 실시한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한일비교 및 입법·정책 방안 연구'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위험으로 고립의 문제와 고립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들의 특성을 검토하고, 특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시신 처리에 대한 제도적 한계를 일본과 비교하고 한국의 사례를 인용하여 분석하였다. 그에 따른 법과 제도적 대안도 제시하였다. 본인은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제도적 검토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해당 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후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안에 대한 몇 가지 의문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의 범위에 대한 의견

해당 연구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자기결정권부터 고립사 통계 및 입법에 관련 사항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연구에서는 무연고사와 고립사를 가족과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 1인가구의 증가의 현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만큼 무연고사망과 고립사가 중첩되는 분야이기 때문으로 인식하게 된다.

고립사의 경우는 대체로 가족이 시신을 인수한다. 따라서 고립사의 범위가 더 넓은 개념이고 무연고사망자는 그보다 작은 범위를 포괄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무연고사망자 현황보다 더 많은 비율의 고립사가 발생한다고 예측 된다.

연구에서 고립사를 함께 검토한 이유는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과제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며, 이들에 대한 예방사업이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연고사망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장례와 사후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실태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땠을까 하는 의견이 생긴다.

2. 용어와 정의에 대한 의견

언론을 통해서 자주 언급되는 고독사 문제는 안타깝지만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고독사 문제에 대한 접근은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차차 그 성과를 검토해야할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독사와 고립사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중에 정책적 용어로 고립사를 후생노동성에서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고독사'라는 용어가 노인 대상으로 이미 적용되어 법, 제도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노인 외의 인구집단 전체에 적용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학술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은 없었지만 사회적으로 합의한 용어는 고독사에 귀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독사 문제에 접근하는 정부의 관심은 고독사를 어떻게 정의 할 것인가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부산시에서 정의한 "6개월 이상 혼자 살다가 혼자 죽은 지 3일이 지난 시신"으로 정의한 것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2016년에 고독사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에서 변사자에 대한 분류를 위해 정의한 '혼자 살다가 혼자 죽은 지 3일 이상된 시신이라는 정의'를 반

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정작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에서는 정의에서 혼자 살다가 혼자 죽고 일정 기간이 지난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계류 중인 법에도 함께 통용하고 있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구체적인 일자를 지정한 점에서 부산시의 방향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변사 현장에서 고독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시신의 부패 여부 정도로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시신의 부패기준은 계절과 환경에 따라서 하루일 수도 3일일 수도 때로는 1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변사자의 경우는 특별한 범죄 상황이 아니라면 부검하지 않는데, 검안의의 사망 추정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도 있겠으나 정확하지 않다.
무엇보다 고독사의 발생은 그 죽음뿐만 아니라 고독사이냐 그렇지 않느냐 만이 아니라 이들이 고독한 삶을 살았다는 근거로 제기하는데 의미를 둘 수 있으므로 자료의 활용과 의미를 검토할 때 3일이라는 특정한 기간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정의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방법과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실태조사는 지자체 차원에서 통계를 내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지난 3월 국회 공청회에서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청에서 변사자 기록을 정리할 때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에서 혼자 살았는지, 시신이 부패되었는지를 확인해 주는 정도로 충분히 국가 통계가 마련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입법 후, 제도적 보완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3. 한국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처리는 법률의 문제인가? 집행의 문제인가?

연구에서는 무연고 사망자는 시체인수를 기피하는 경우로 연고자에 대한 정리를 가부터 아까지 정리하고 있다. 나눔과 나눔의 공영장례 사례를 통해 사망자의 장례를 가족 외의 지인이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에 대해 생생하게 전달되는 내용이었다. 그 내용에 대한 본인의 판단은 현재 정해져 있는 연고자에 대한 기준 가부터 아까지 제대로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입법도 중요하지만, 입법된 내용이 행정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가족 외의 장례나 시신 인수를 정하는 법 또는 시행령에 관련 절차를 운영하기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조항만 있는 법이 될 수 있다.

4. 정책의 책임 영역과 접근방법

본인은 고독사와 관련된 서울시 정책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은 정책당국은 죽은 자에 대한 제도보다는 산 사람에 대한 제도를 더 중요시 한다는 점이다. 물론 고독사의 문제를 서울시가 소홀히 한다는 것이 아니다. 정책은 제한된 예산을 사용하는 영역을 주로 고독사의 예방 즉 산자의 영역에 지출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낄수 있었다.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법률은 시체에 대한 책임 소재가 없을 경우의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산자의 문제 영역으로 다루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해당 정책을 제안하거나 문제제기할 때 이 점에 한계가 있어 대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무연고 사망자의 사후자기결정권의 문제를 접근할 때도 이 건으로 인한 남겨진 자가 겪는 죽은 자와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 애도의 권리 등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5. 일본의 NPO법인인 LISS시스템과 인연의 모임과 같은 민간 차원의 역할 필요

마지막으로 본인은 정부의 정책의 한계가 분명한 영역에서 NPO가 각종 정부의 지원과 개인의 약정 금액을 통해서 운영되는 체계가 검토되길 바란다. 일본의 좋은 사례들을 연구에서 검토하였다. 공영 장례와 죽음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인식을 개선하는 접근을 실시하는 나눔과 나눔의 경우, 지자체의 위탁에 의해서 공영장례를 치르고 오늘과 같은 정책적 고민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관련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결론에서 민간 기관의 역할과 지자체 모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신사회 위험의 돌봄 영역의 확장을 검토할 필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돌봄의 사회화 정책은 신사회위험 정책의 핵심 영역이다. 이에 아동, 노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사회서비스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 사업은 국가보조, 보험 방식으로 욕구가 있는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웰다잉에 대한 영역을 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죽음은 사회정책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서비스 영역에는 호스피스 제도마저도 포함되어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죽음의 질 연구에서 장기요양제도가 있는 사회가 죽음의 질이 높다고 판단하는데, 한국사회에는 장기요양제도는 강화되고 있으나, 호스피스제도 및 사후에 대한 정책적 내용은 무척 부족하다. 따라서 죽음의 과정과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접근으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그 분야에 사후자기결정권 문제도 검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7.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여전히 고민되는 점이 있다. 산자가 죽은 후에 자신의 일에 대해서 계약으로 남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어느 기간까지 이행되는 것이 맞을까? 대체로 사후 직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누군가 뒷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의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점에서 사회가 갖춰야 할 권리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후에 대한 약속과 그에 대한 집행이 한 개인을 넘어 사회적으로 의미 있기 위한 연결고리를 찾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본인은 고독사와 무연고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부검을 제안한다.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이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유사하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부검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남기고 간 관계망과 흔적을 통해, 사회적 위험의 내용과 사회적으로 노력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관련 기반이 마련된다면 개인적 권리에 대한 법적 접근과 함께 사회적 의미를 더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진다.

귀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해 주셔서 큰 공부의 기회를 주신 나눔과 나눔의 박진옥 상임이사님과 연구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토론 2.

토론문

김효석 | 법무사

1. 들어가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에 관한 발표자님들의 연구와 입법·정책제안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소중한 연구결과가 하루속히 정책과 입법에 반영되길 기원합니다.

저는 2013년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시행 후 각종 후견인·후견감독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 후견인입니다. 실제로 제가 한정후견인으로서 약 3년간 돌보고 있던 무연고 할머니께서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올해 1월 1일에 사망하는 바람에 부득이 사망 이후의 모든 절차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부딪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법률신문을 통해 해결방안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1)]

그래서 저는 무연고 사망자를 둘러싼 여러 내용 중 성년후견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발표자님의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2. 사망진단서 발급에 관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를 발급받는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사망진단서는 그 이후의 장례식장으로의 사체이송, 장례식장의 이용, 화장, 사망신고 등 거의 모든 절차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원활하게 장례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후견인 등 일정한 범위의 관계인이 신속하게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제1항[2)] 본문에서는 사망진단서의 교부대상자를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위 교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 것 자체가 여의치 않습니다. 제가 후견인으로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하물며 아무 연고가 없는 제3자의 경우에는 더욱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하여 발표자님의 의견과 실무 사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1) "무연고 법인후견 대상자 死後정리는 누가 맡나…", 법률신문 2019. 1. 9.자 기사 참조

2)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3. 장례절차에 관하여

후견은 피후견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새로운 후견인이 그 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후견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959조, 제691조). 이를 「긴급처리의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무연고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장례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긴급사무의 범위에 속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긴급처리의무에 기한 사후사무(死後事務)의 범위도 종전의 후견사무의 범위 내인 것이 대전제가 되는데, 매장·화장을 포함한 장례는 피후견인의 사망 그 자체에서 생기는 사무이고, 재산관리에도 신상보호에도 직접적으로는 해당하지 않는 사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2016. 4. 6. 「성년후견사무의 원활화를 위한 민법 및 가사사건절차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되어 같은 달 13. 공포되었고, 6개월이 경과한 2016. 10. 13.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 법 중에서 「피성년후견인 사망 후의 성년후견인의 권한」에 관한 민법 제873조의2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873조의2(피성년후견인 사망 후의 성년후견인의 권한)**
>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분명한 때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행위를 함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 1. 상속재산에 속한 특정 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
> 2. 상속재산에 속한 채무(변제기가 도래한 것에 한한다)의 변제
> 3. 그 사체의 화장 또는 매장에 관한 계약의 체결 기타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전2호에 규정된 행위를 제외한다)

저는 후견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위 입법례를 참고하여 기본법인 민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관하여 발표자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4. 사망신고 적격자에 관하여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고(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1항), 병원·교도소·그 밖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사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91조→제50조).

한편, 사망자의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85조 제2항), 이들을 신고적격자라고 합니다. 신고적격자는 신고의무자와 달리 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예규에서는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가 아닌 사람이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신고와 같은 보고적 신고는 실체적 신분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시(구)·읍·면의 장이 그 신고서류를 참고자료로 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3] 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의 기재가 늦어져 후속 업무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 생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신고적격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보통 3~5일 정도면 완료되는 절차가 감독법원의 허가를 거치느라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호적법 제87조 제2항에서는 후견인 등도 사망신고 적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발표자께서는 발표문 60면에서 임의후견인을 포함한 성년후견인을 사망신고 적격자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에 관하여 공감합니다.

3) 사망신고인이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나, 사망신고서에 사망진단서 그 밖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그 첨부서면을 자료로 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기록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사망의 기록을 한다(「사망신고의 신고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0호).

토론 3.

일본 오사카의 행려사망 실태

야마다 미노루 | NPO가마가사키 지원기구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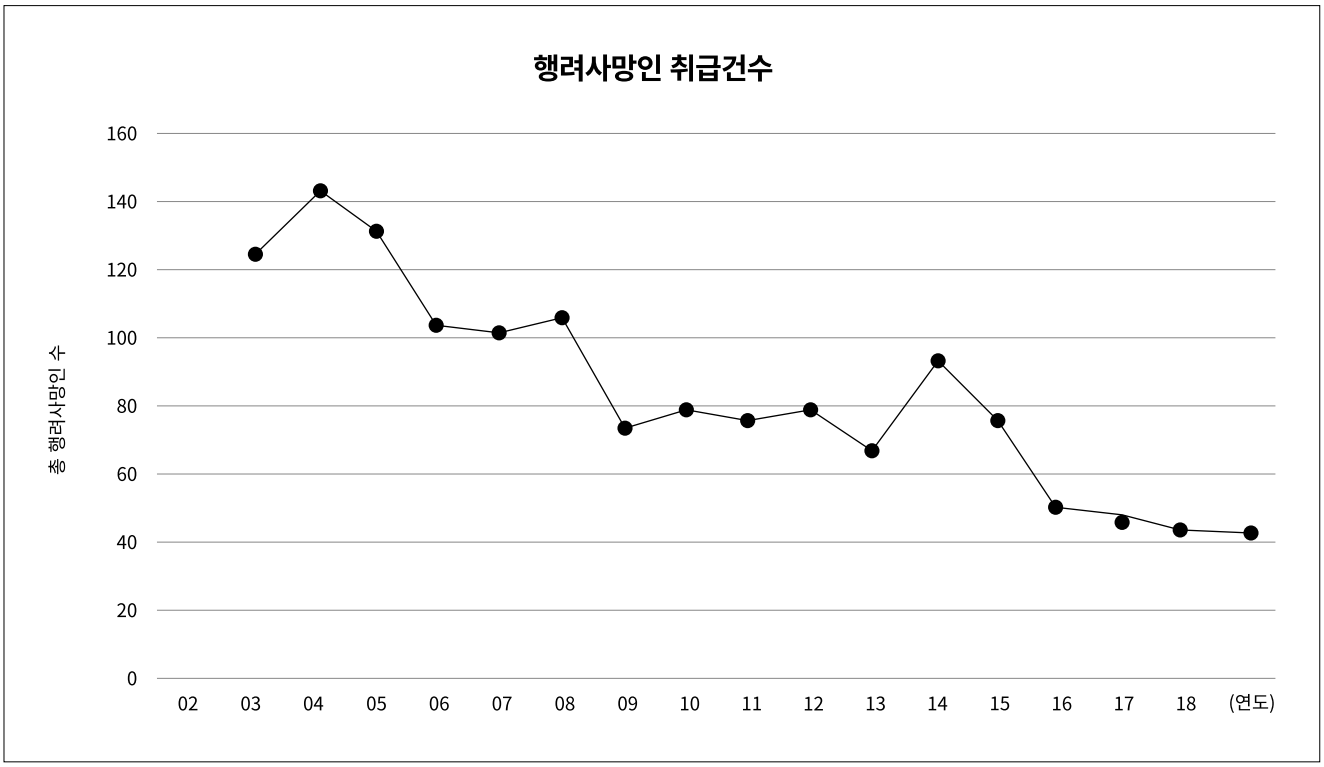

오사카시 연도별 행려사망인 현황

구/연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기타(北) 구	7	12	17	13	11	15	14	8	5	4	7	9	7	4	2	3	0
미야코지마(都島) 구	2	8	4	4	11	4	2	4	8	7	5	12	7	2	3	1	6
후쿠시마(福島) 구	8	7	2	5	1	7	2	3	2	1	3	3	6	6	0	1	0
고노하나(此花) 구	5	9	4	2	4	4	4	5	2	2	5	3	2	2	1	1	1
주오(中央) 구	12	13	13	10	9	9	12	12	9	11	3	3	7	4	5	6	8
니시(西) 구	4	2	2	3	1	5	0	2	3	2	1	2	1	0	0	1	1
미나토(港) 구	6	5	9	5	2	5	3	3	2	4	0	5	2	2	1	1	0
다이쇼(大正) 구	3	2	2	3	4	3	1	1	1	1	0	1	2	0	0	1	0
덴노지(天王寺) 구	3	5	1	3	1	1	3	3	2	0	3	1	0	1	0	0	0
나니와(浪速) 구	8	10	5	14	7	6	3	4	4	9	9	5	4	5	3	3	4
니시요도가와(西淀川) 구	4	5	6	5	4	2	2	1	1	4	6	6	4	4	1	3	4
요도가와(淀川) 구	6	8	3	7	8	7	8	9	8	10	6	5	3	6	7	3	6
히가시요도가와(東淀川) 구	3	3	8	5	3	6	1	2	3	0	0	6	4	3	2	9	5
히가시나리(東成) 구	1	0	1	1	0	0	0	1	1	0	0	0	0	1	2	0	0
이쿠노(生野) 구	1	2	0	3	2	1	0	0	0	2	1	1	0	0	2	0	0
아사히(旭) 구	6	1	2	0	3	1	2	1	1	1	0	0	0	0	2	2	1
죠토(城東) 구	3	2	2	1	0	2	2	1	0	1	3	2	2	1	2	0	0
쓰루미(鶴見) 구	1	1	0	0	0	0	0	0	1	3	1	0	0	0	2	0	0
아베노(阿倍野) 구	4	5	5	2	1	1	0	1	2	0	0	3	0	1	2	0	1
스미노에(住之江) 구	11	12	13	5	7	6	5	5	2	3	3	3	4	3	2	4	6
스미요시(住吉) 구	1	2	3	0	1	2	2	3	5	8	0	0	0	1	2	1	0
히가시스미요시(東住吉) 구	3	3	3	2	2	0	0	0	2	0	0	0	0	0	2	1	0
히라노(平野) 구	2	1	1	3	1	1	0	1	2	0	1	1	2	0	2	0	0
니시나리(西成) 구	19	24	25	9	18	17	8	9	9	6	10	22	18	4	2	2	0
합계	**123**	**142**	**131**	**105**	**101**	**105**	**74**	**79**	**75**	**79**	**67**	**93**	**75**	**50**	**47**	**43**	**43**

유류금품이 없이 혼자 사망한 경우 생활보호법에서의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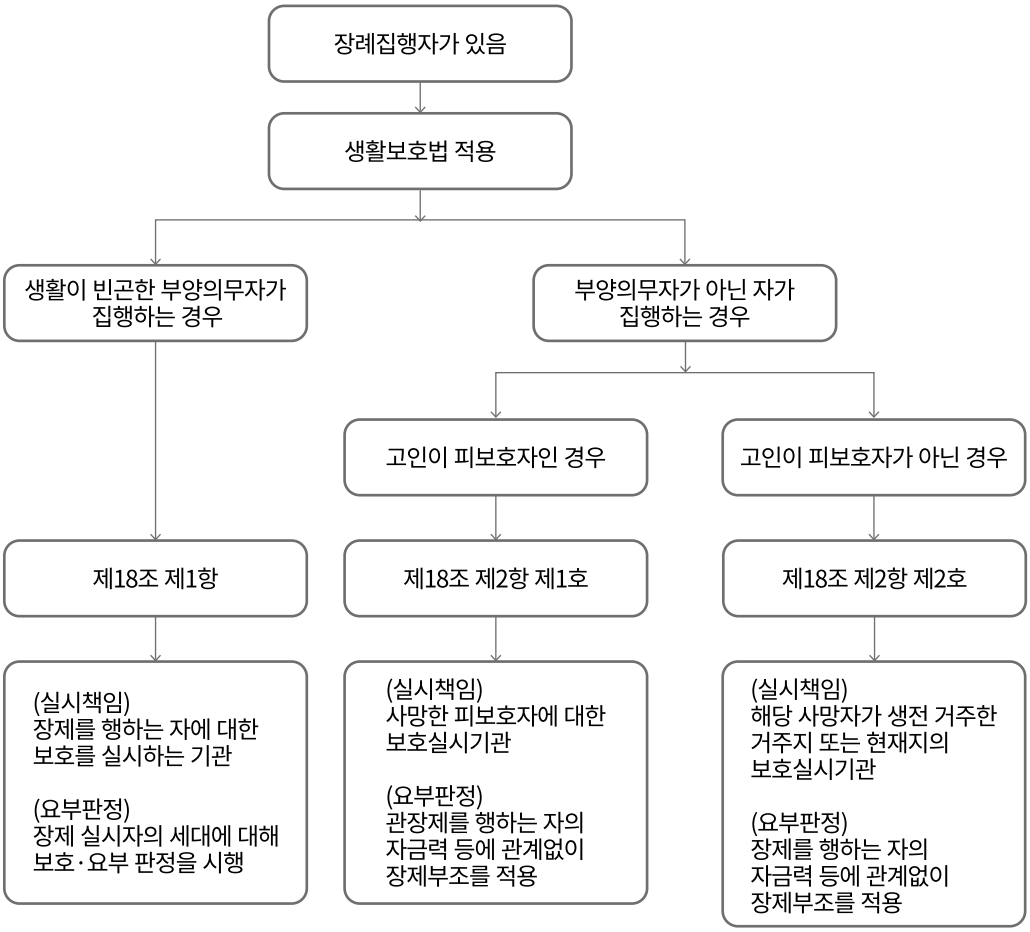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법」「묘지·매장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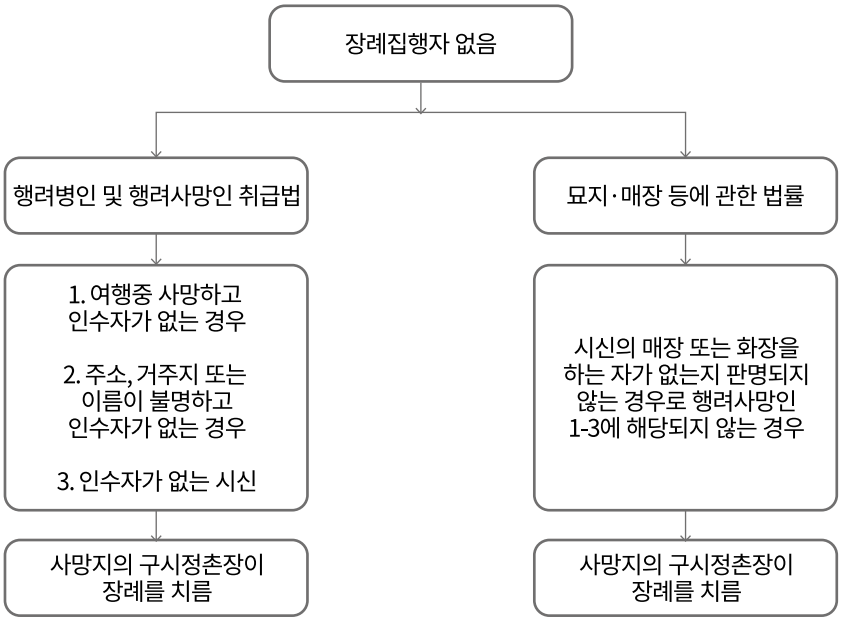

memo.

memo.

발제 원문 및 번역문

Status of Post-Mortem Right of Self-Determination for the Unclaimed Dead in Korea and Policy Proposals

Jin-ok Park | Executive Director at Good Nanum Incorporated Association

In Korea, there are more than 2,000 unclaimed deaths every year who die 20 years earlier than the average life expectancy. Among these unclaimed bodies, the ratio of those aged below 64 is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above 65, and ratio of men is three-time higher than that of women. Also,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to be noted for the unclaimed dead is post-mortem processes that take place after the death, including the funeral. In particular, there are issues in the process, scope and the order of priorities for the next of kin(NoK) of the dead in delegating the corpse to the government. Most of the unclaimed dead have families, but in most cases, these family members give up on taking up the body due to economic reasons or severed relations. In other words, the unclaimed body is denied of his/her last human dignity of having a proper funeral due to economic hardship and etc. Also, when a next of kin with the highest priority gives up on taking over the dead, the relative with the second-highest priority cannot hold a funeral for the deceased even if they want to. Blood-tie is still valued so highly in the Korean society that those without kinship with the deceased cannot offer any post-mortem actions to the person who died. In other words, it is not possible for a partner or a close friend of the unclaimed dead to perform any post-mortem ceremony, such as a funeral. For example, there was a common-law couple who had been together for 20 years and the wife died in the arms of the husband, but the husband could not hold a funeral for his wife and just had to send her away as an unclaimed dead. Also there were merchants who wanted to hold a funeral for their colleague but the Korean society did not allow that. There was also a woman who left a will asking her fiancé to hold her funeral but he could not carry out her last wish due to the fact that they were not related and had to let her leave as an unclaimed dead. Because of these issues, people with estranged relations with their family members are concerned about their post-mortem processes.

The issue of solitary death and unclaimed death in Korea dates back to two decades ago when Korea was struck by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As such, it would not be easy to correct this situation in a short time with just a few tweaks in laws and policies. Thus, we need to create a slow but steady tide of changes. It can start with small things we can execute immediately. For this, I would like to make a few policy proposals to create a socio-cultural environment to guarantee the post-mortem right of self-determination for the deceased, focusing on issues identified in the field. ① Systemized statistics on unclaimed deaths, ② Creation of a government body responsible for the mid-aged population of Korea who are put in the welfare blind-spot, ③ Creation of countermeasures to prevent the social isolation, ④ Institutionalizing the public funeral service which is currently decommoditized, ⑤ Establishment of a public control tower to operate the public funeral service, ⑥ Improvement in the social perception on death, ⑦ Enactment ·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to allow 'holding a funeral on behalf of family members' and 'holding a funeral as one wishes'.

Necessity for a legislation on comprehensive response to solitary deaths and unclaimed deaths

Hee-chul Yang | Attorney at law

A) Changes in status of solitary deaths and unclaimed deaths

Solitary deaths and unclaimed deaths are no longer just an issue of the elderly but it is affecting a wider population including the youth, the middle-aged and the elderly. As such, we need a transformation in the way we respond to solitary deaths and unclaimed deaths in the Korean society. Solitary deaths and unclaimed deaths are inevitable consequences of the one-person household, which is on the rise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unmarried people and longer life expectancy. In this sense, we need to acknowledge the funeral service as a duty of a community and look at this issue of solitary and unclaimed deaths not as an issue of individuals but of the entire society.

B) Limitations in revising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As discussed above, solitary deaths and unclaimed deaths are no longer limited to a certain class of people. As such,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solitary deaths and unclaimed deaths should be applicable independent of age, region, gender, etc. Of course, revision of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on funeral can, to some degree, satisfy the presumptive intent of the person concerned. However, the legislation on comprehensive response to solitary deaths and unclaimed deaths, which has the objective of guaranteeing the post-mortem right of self-determination for the deceased, should enclose articles on solitary and unclaimed deaths that were not handled in the existing laws on funeral.

D) Reflecting the post-mortem right of self-determination

During the enactment of the legislation on comprehensive response to solitary and unclaimed deaths, one of the most critical facts to be acknowledge by the Korean society is that the deceased who ended his/her life in such a way also has a human dignity and that the law should be enacted in the direction of respecting the self-determination right as much as possible, as it is derived from such human dignity. This intent can also be confirmed in Article 1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Public Funeral Service. It states that “the Ordinance is to preserve the dignity of the deceased by stipulating items necessary for stable funeral service, such as supports for funeral service and preparation of the funeral parlor, for those without next-of-kin and the low-income class who cannot afford the funeral service due to dismantlement of family or poverty.”

As such, in the aforementioned law on the comprehensive response to solitary and unclaimed deaths, it should stipulate that, if it is possible to confirm the involved person's intention on funeral, it should aim for the maximum realization of such intention, and if the intention of the person concerned cannot be confirmed, the competent jurisdiction should be entrusted with the authority to collect and review any documents to confirm the presumptive intention of the person concerned. Through this, the deceased's post-mortem right of self-determination would be guaranteed to certain degrees.

韓日国際シンポジウム

日時２０１９年9月１９日（木）１４：００－１７：００
場所：和友公益財団法人　研修院（ソウル　江南区　　ASEM TOWER)
主体：和友公益財団法人

テーマ

自己決定による契約家族づくり活動
－生前契約プログラムの実践事例－

発表者：NPO りすシステム創始者　松島如戒

１.死の自己決定プログラムの原点としてのもやいの碑

私たちの活動は墓の自己決定から始まった。

日本では 1980 年代から主として女性活動家による「女ひとりでは墓を売ってくれない」という墓の問題が社会的にクローズアップされた。

この問題解決の一つが 1990 年にスタートした「もやいの碑」である。

この墓は人権問題に生涯を捧げた東洋大学学長などをつとめた、故磯村英一先生のご教示を得て、私の運営するすがも平和霊苑（東京都・巣鴨）内に、建立した日本における合葬式墓地の先がけとなった墓である。

もやいの碑という墓に納骨するためには、生前に自己決定してもやいの会に入会していることが条件である。それ以外、宗教、宗派、民族、国籍、門地、性別等一切の制限を設けていない。

もやいの碑は建立から 30 年になるが既に納骨されている会員は 2803 名。死後この墓に入る約束をしている会員が 3037 名である。

現在生存会員数はピーク時には 3600 名であったが、新規入会者より死亡者が多いという状況にあるが、もやいの碑は私が建立したすがも平和霊苑の設置母体である、功徳院東京別院が末長く管理していくので、会員が減少しても墓の継続管理について全く懸念がない。

２.契約家族づくりとしての生前契約へ向けて

人間の欲というより心配ごとには限りがなく、墓問題が解決し安心すれば、次は墓に入るための火葬や葬儀をしてくれる人がいない。

「仏つくって魂入れず」というではないか。寺でももやいの会でも良いから、墓に入るまでのいわゆる死後事務を引受ける仕組を作ってほしい、というもやいの会員からの強い要望が出て来た。

これに対し私は趣旨は十分理解しました。しかし 800～1200℃で焼却したお骨は傷まないけど、遺体は刻一刻と腐敗すること。他人の火葬や納骨を他人が喪主として行うことが、日本の法律で認められるか等々、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がありそうなので、2～3 年くらい準備期間が必要だけど必ず実現しますと約束した。

日本では、喪主は子、配偶者などと決まっていることを、他人が喪主となれるのかについて、法律は民法第 897 条で死者本人が生前に誰かを（他人でも良い）喪主（祭祀を主宰すべき者）として指定してあれば、その指定された者が喪主となれることが分かった。指定の仕方について特別の方式は決められていないが、私たちは公正証書の遺言によることにした。

3.喪主として行った仕事の対価をどうするか

喪主として仕事をする資格を得て、仕事をしたがその代金はどうなるのかが次の課題となった。

自己決定は自己責任により実現する。

そのためには死者本人が、仕事をした人に支払うことが必要且つ重要である。

これも通常は相続人が喪主になり相続した遺産などから葬儀代を払っている。

仕事をする側は前払いしてもらうことが良いが、払う側にとっては仕事をするのは本人が死んでからなので、金は払ったが本当に仕事をしてくれるか否か心配になる。そんな仕組みを作っても多くの人に理解されず広がらないだろう。

民法第 1002 条に「死後頼んだ仕事（負担）をしてくれたら、財産をあげる（遺贈）」という「負担付遺贈」の規定がある。これは遺言に書かなければ有効ではない。

喪主になって葬儀、火葬、納骨が出来て、お金は遺言に負担付贈与すると書いてあれば仕事をする側も、心配なくお金は支払ってもらえる。これで大枠は出来た。

4.社会関係の清算をどうする

身柄の始末は他人が出来る方法を見出したので OK だが、人が死ぬと健康保険や公的年金、介護保険等の資格喪失届け。住んでた部屋の片づけや不要品の処分、借家や公営住宅なら家主への返還手続きなどの仕事。公共料金の支払い。

これら数多くの仕事をどうするかが大問題となる。

これらの仕事は死者本人から委任されないと勝手には出来ない。民法 653 条は「委任契約は委任者又は受任者の死亡により終了する」規定している。

死後の様々な仕事をしてほしいと委任契約を結んでいても、委任者（頼んだ人）が死ねば無効になるのでは手も足も出ないことになる。

「困った」と思案していたら「天恵」としか言いようがないが、最高裁判所が民法 653 条の解釈についてすばらしい判決を出してくれた。

民法 653 条は任意規定なので、特約で別のことを決めてあれば特約が優先する。そもそも死後の仕事を他人に頼む時には、自分が死んでも有効だというだということを前提にしてのことである。というものだった。

この判決をもって全ての委任契約が死後有効であると言い切れない、といった学者の説もあるが、少なくとも生前契約 26 年の歴史で 1 件の争いもない。

5.生前契約を世に問う

このような自己決定を自己責任によって全うすることがサポート出来る仕組の名称を「Living Support Service（Liss）システム」正式名称は「りすシステム」とし、1993 年 10 月、世に問うた。2000 年 11 月に NPO 認証を受け、現在に至っている。

メディアは大々的に報道しその反響も大きかったが、1 にマスコミ、2 に葬儀業界、3,4 がなくて 5 に顧客といった状況で、反響のわりに契約者は伸び悩み経営には苦しんだが、霊苑の収入がそれを支えた。

経営は現在に至るも楽ではないが、契約者がりすシステムに遺贈するという遺言を書いてくれ、その収入が総事業費の 60%を占めているが、これは正常な姿ではない。私たちの生前契約は NPO として実践し元より収益を求めているのではない。そのためには契約者の負担を限りなく少なくして、より良いサービスを提供しようという経営理念の実践でもある。とはいっても経営の安定性、永続性は最も重要である。そのための改善策に現在取り組んでいる。

6.りすシステムの現状

契約者合計 6175 名・現在有効契約者数 3815 名・死亡者 1174 名・解約者 1172 名(2019 年 7 月末現在)

総契約者数に対し現在生存し契約が有効に継続されている件数は 3815 名である。26 年経つと死亡者も日々増えているが契約解除件数も意外に多い。これは主として親族が引受けるのでというケース。自己決定で契約したものである故、解約については本人意思を十分確認した上での取扱としている。

契約家族の構造は生前、後見、死後について 5 種類の委任契約、遺言によっている。

生前契約基本契約書	生前事務委任契約公正証書	任意後見契約公正証書
遺言公正証書	死後事務委任契約書	

死後事務は先に述べたように遺言による負担付遺贈を根拠として、システム構築したので、死後事務委任契約は遺言が単独行為（一方的な意思表示）であることを補完する構造である。

平均寿命女 87　歳、男 82　歳となった現代、60 歳の契約者が死亡するのは 30 年ほど先のことである。30 年先のことなど決めておいてどうなるものか…と考えるが、人の寿命ほど不確実なものはなく、明日かも来年かも知れない。そのために、明日死んだらどうするかを前提に死後事務は本人が企画書などにより設計してある。

日本では 2000 年 4 月に民法の成年後見に関する規定の全面改正、新たに任意後見契約に関する法律も同時に施行された。

任意後見契約制度は後見状態になっても、正常な判断能力があるとき（健常時）に行った自己決定の実現が図れるという画期的な制度である。私たちはいち早くこの制度を契約家族の仕組に取り込み、現在任意後見契約を締結している件数は 3949 件。

日本の任意後見契約制度では公正証書契約が条件で、認知能力（事理の弁識）が不十分になった際、医師の診断により家庭裁判所に任意後見監督人選任請求をして、監督人が選任された時点で発効するというものである。りすシステムでは 2002 年 3 月より任意後見契約の受任を開始し、本年 6 月末までの契約受任数が上記の件数で、監督人が選任され、契約が発効した件数が 89 件。現在有効件数が 39 件。50 件は死亡等である。

私たちは後見状態になっても自己決定の実現を図ることを目的に「後見事務履行に関する事前意思表示書（後見ノート）」なる意思表示書を作り、認知症等になったときの生活のあり方を記載したものをデータベースに収め、後見事務履行のよりどころとしている。（書式）

医療上の判断に関する事前意思表示書は最近日本でも普及しているが、後見状態になったときの意思表示は他に例をみない。

りす倶楽部

2015年
4・5月合併号
第235号

桜

冷たい雨が続く今年の桜。せっかくこの世に生まれながら、倖せ薄いまま去ってゆく人生と重なる。涙の雨滴を連れ添った花びらの美しさが、愛しかった。

弁護士　福井大海

法と人権

日本学士院会員
京都大学名誉教授
奥田　昌道
（元最高裁判所判事）

「法と人権」というテーマで講演依頼を受け、その趣旨を慮っていたとき、ふと目に留まったのが、ＮＰＯりすシステムのパンフレットにある「『死人に口なし』。よく言われる言葉です。日本国憲法でさえ死者に人権を認めていません。しかし、生前契約は死者の尊厳を認め護りたい、護ってほしいと求めている人の願いに応えたい、そんな思いを出発点にしています。」という文章でした。

　このことを20年以上前から唱えていたとすれば、ＮＰＯりすシステム、ひいては創設者である松島さんの着眼点は、画期的で素晴らしいものです。これまで、法律に携わる者でだれ一人「死者の人権」について、公に発言した人はいないのです。

　そもそも民法では、人間の権利能力について「私権の享有は、出生に始まる（第３条）」と始期を規定しており、その例外として３つの分野で胎児にも権利を認めているだけで、権利能力の終期については、当然に死亡時であると考えられてきました。しかし、ＮＰＯりすシステムの皆さんは、死亡後も死者本人に人権があると認めるべきだとおっしゃっている。これは今後、幅広く議論されるべきまったく新しい論点なのです。

　ここで「死者の人権」について考えるとき、きちんと整理して考える必要があります。一つは、死者の財産権については、死亡時に相続という形で解決されてしまうということ、もう一つは、「死者本人の人権」と「遺族の人権」を混同してはならず、ここで問題にすべきは「死者本人の人権」

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今回は「Ai取扱技師養成」のための講演なので、「死者の人権」と「死因の明確化」がどうやって繋がっていくかを考えてみましょう。

皆さん、生きている間はご自身の身体情報について、すべて知る権利を有しています。体脂肪率はいくらか、血液型は、ＤＮＡ鑑定で誰の子なのか……など、知りたいと思ったことは本人であればすべて知る権利があります。病院で「私の病気はなんですか?どういう病気で、どのように死んだのか」、自身についての情報を知る権利を有し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これまでは、遺族が「お父さんは元気だったのに、突然死んでおかしい」といって、遺族としての立場や権利を行使して、死因を調べていました。しかし、実は遺族だからといって、死者の情報を調べてよいという法的根拠を見つけるのは難しいのです。では、死者の権利を遺族が代行して使っているのかと言えば、これも現時点で認められていません。このように、今の法律では、この点が曖昧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のです。

もうひとつ例を挙げてみましょう。死者の情報でよく問題になるのが、名誉棄損の事件です。既に亡くなった人について、小説や週刊誌などがあることないこと書き立てた場合、それを問題にした遺族が、作家や出版社を相手取って出版差し止め請求をすることがあります。あれは、誰の権利で訴えているのでしょう。遺族が「お父さんのことを馬鹿にされて、私が傷ついた」としているのか、はたまた死者本人が「ワシを馬鹿にするな!」と怒っているのか。

ＮＰＯりすシステムの皆さんは、後者を認めるべきだとおっしゃっているわけです。死者が怒っているんだ、だから私たちがそれを代行しているんだ、という立場です。生きている人間が自分自身を知る権利を有しているのならば、死んだ人間にも自分自身を知る、つまり死因を有しているはずだという発想なのです。

親族関係が希薄、もしくは親族そのものがいない状況で亡くなっていく方が、今後どんどん増えていく中、医療事故調査制度が制度化され死因究明が推進されていく過程で、これまでは死因究明の権利主体が、「遺族の権利」というようなうやむやな形で処理されてきたようですが、ＮＰＯりすシステムから「死者の人権」について一石を投じることで、きちんと議論されるべきだと思います。

발제4. <원문>

日本における、終末期および死に関する自己決定権支援

東谷幸政|精神医療国家賠償請求訴訟研究会　代表

1. 終末期における医療についての自己決定支援
2. 終末期における権利擁護
3. 葬祭における支援
4. 埋葬に関する支援
5. 課題

1. 終末期における医療についての自己決定支援

死ぬまで住み慣れた自宅で暮らしたいと願う老人が大多数を占めながら、終末期を病院で迎える老人がほとんどというのが、現状である。

その原因の多くは、在宅ケアについての支援システムの不足と在宅ケアのマンパワーの不足と家族への過大な負担である。

特に地方における介護のマンパワー不足は深刻であり、若年層のマンパワーの不足から、外国人介護労働者の導入が開始されている。

ケアワーカーのなりて不足の原因は、重労働にも拘わらず、介護保険報酬に規定された低賃金と社会的地位の低さがあげられる。

このため、希望すれば誰でも簡単に病院や老人施設の介護の現場に入れる状態となっており、担い手の質の低下が指摘されている。

老人施設や障害者施設における虐待による暴行や死亡の事例が頻発しているのが現状である。これに対する有効な予防手段は打てていない。

このような背景があるものの、老人が終末期に希望する医療に関する自己決定は保障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

大抵の老人施設や重度の障害者施設では、入所時の聞き取りで、終末期にうける延命治療や蘇生術等についての希望を聞き、文章化して署名していただくことが行われている。こうした希望は時間の経過により変化してゆくことをふまえ、毎年希望の変化を聞き、関係者のケア会議で確認するということがおこなわれている。

この結果、以前は問題となった、ご本人が望まない過剰延命措置や蘇生医療が行われることは少なくなった。

2. 終末期における権利擁護

日本の労働市場における非正規労働者の割合は４０パーセントになり、低賃金の労働者層が拡大している。これにともない、一生結婚しない、家族をもたない層も拡大を続けている。このため、独身者が増えて、単身の老人の割合も拡大を続けている。

単身の老人に対する財産面の擁護については、主に社会福祉協議会による金銭管理のサービスや、後見人による財産保全が行われているが、後見人によるサービスは有料で、財産面で恵まれた層にしか活用はできない。
在宅の単身老人については、センサーを活用した安否確認を警備会社が行ったり、民生委員による訪問、郵便局や新聞配達所などの社会的インフラを活用した見守りサービスが行われてきている。

3. 葬祭における支援

日本社会における葬祭の変化は著しい。葬儀も結婚式も、行わない、またはごく近縁のみの限られたもののみによることが増加している。
貧困者あるいは身寄りのない人への葬儀支援には以下のようなものがある。

・生活保護法による葬祭扶助…給付は206000円以内。
・医療保険・国民保険の死亡給付、葬祭扶助…5万円。
　公務員や教員などの保険では、独自の付加給付を設けている。
・市民葬…自治体が葬儀社と提携して安価な葬儀を提供している。
　15万円程度で簡素な葬儀を営むことができる。
・行路病人及び行路死亡人取扱法
　旅行者や身元が不明な人が死亡した場合には、死亡地の自治体が責任をもつことが定められている。

4. 埋葬に関する支援

・死亡者の係累が所持する墓地への埋葬
・老人施設や障害者施設が寺院等と提携する墓地への埋葬
・公立墓地・霊園にある共同墓地への埋葬

生前に、どの墓地に入るかを本人が意思表示していれば、それによる。意思表示がなければ家族の意向による。
意思表示がなく、家族がなければ福祉事務所などの関係機関あるいは施設が決定する。

5. 課題…進行する無縁社会の中で

・現在の日本社会は、少子高齢化社会となり、地縁血縁が希薄となり、プライバシー保護の厳格化、終身雇用制度の崩壊といった状況が重なって、単身者は孤立を深めやすい構造になっている。東京では生涯未婚率が30パーセントを超えており、2030年代には日本全体がそうなることが予測されている。
　フリーアルバイター、派遣労働者といった非正規労働者は40パーセントを超えた。
　日本は自殺率が世界で最も高い部類に属しており、一方で年間3万人もが孤独死している。

こうした風潮を背景に、これをビジネスチャンスととらえてさまざまな無縁ビジネスが繁盛している。現代日本の社会構造の変化に対する有効な手段はみつかっていない。

しかし、地縁や血縁、企業を頼りとした共同体が崩壊に向かう以上、個人を単位とした新たな結びつきを求めるよりないと思える。
私個人としては、韓国のKBSテレビで紹介された地域通貨のこころみ「生老病死の秘密」や、インテンショナルグループ、セルフヘルプグループなどの仲間を大切にしながら、老後の生活の質を高めるための公的、私的の新たな縁を大切に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実践している。

日本の精神科医療の惨状と死亡に関して
世界に存在する精神科ベッドの20パーセント、30万床が日本にある。異常な多さで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その質も極めて低い。
OECD加盟国の平均入院日数は20日程度だが、日本では260日となっている。病気が治っても退院できないことが普通にあり、病院経営上の理由から長期にわたって入院を継続するという、許しがたいことが蔓延している。
精神科病院での死亡は年間18000人から2万人にのぼっており、充分な内科的医療が受けられず、精神障害者の平均寿命は日本人全体に比べて20年も短い。地域社会の中で精神障害者をケアするための社会資源もアウトリーチによる地域サポートシステムも未整備のままだ。
国連人権問題小委員会、WHO，ICJ(国際法律家委員会)などからの改善勧告や非難決議も多数出されているが、改善の兆しはない。

精神医療国家賠償請求訴訟の現状
こうした現状を変えようと、東谷は2012年から研究会を立ち上げ、ジャーナリスト、弁護士、障害者本人、家族たちと国を相手取っての国家賠償裁判の準備を進めてきた。長期入院を強制された原告を2013年から募集してきたが、ようやく原告が現れ、今年の暮れか、来年には国を提訴するところに来ている。二つの地方裁判所で提訴する予定である。
日本の精神医療政策が、国際的に見て劣悪であることを行政府は認識しながらも、有効な手段を講じてこなかった、やるべきことをやらなかったという不作為の責任を日本政府に取らせようという試みである。
この裁判に勝てなければ、劣悪な日本の精神医療を大きく転換できる見通しは立たない。勝たなければいけないし、勝てる可能性は大いにあると考えている。

施設における死亡時の葬儀の実際

私が勤務していた、社会福祉法人の救護施設は生活保護法によって作られた施設であり、入居者のすべては生活保護の受給者であり、精神障害者である。ほとんどの方が数年から数十年の精神病院の入院を経過している。

施設には、施設運営のための人件費等の給付と施設の入居者に対する個人給付が国から別個に支払われる。
入居者への個人給付の大半は日用品費であり、個人の預金通帳は施設が預かり、毎月の給付により通帳に入金される。必要があれば、事務所への申請で現金化できる。

このため、施設側はある程度の施設入居者の個人預金状況を把握しているが、入居者の中には施設が管理している預金通帳とは別の通帳をもっており、そこに預金している人もいるが、それは全体像を把握することは出来ない。

施設の入居者が、隣接の病院や施設内で死亡した時には、ご本人の通帳を管理しているために、ある程度の預金額が把握できている。

多額の預金額がある場合は、遺族との相談のうえで、葬儀費用はご本人の預金から支出する。残った預金は遺族に渡される。
ほとんど預金が無い場合は、入居者の元の住所を管轄する区市町村福祉事務所の担当のケースワーカーに生活保護法にもとづく葬祭扶助費の申請を行い、葬儀と埋葬の費用を生活保護費から支出していただくことになる。

施設には、病院、老人ホーム、他の施設との共有の冷暗所がある。
施設入居者が死亡すると、病院の医師による死亡診断書が発行され、霊安所に移される。
ここで当日のお通夜、翌日の告別式・葬儀が行われる。
親族や友人が見送ることになるが、親族がいないかたも多い。
そのために、遺体を荼毘にするために都立の葬祭所において立ち会うのは、施設の職員と親しかった友人のみということもある。

通夜、告別式、荼毘、埋葬については、社旗福祉法人東京福祉会という法人が請け負ってくれる。この法人は共同の墓地を持っており、墓地をもたない方の遺骨は、この共同墓地に埋葬される。
　施設によっては、近所の寺院と提携して、寺院の中に専用の共同墓地をもっている施設も多い。

埋葬については、個人の家族の墓地、都立の共同の墓地、東京福祉会の共同墓地、施設が保有する寺院と提携した共同墓地の中から、ご本人の意思に従って埋葬される。意思の表示が不明な場合は、遺族の意思に従うが、遺族がいない場合には、福祉事務所の担当のケースワーカーと相談のうえで、埋葬場所を決定している。

Unclaimed dead issue and regulations in Taiwan

Anne-chie WANG 王安琪
National Taiwan University
d04325002@ntu.edu.tw

International Symposium on Rights to Self-Determination at End of Life
19 September, 2019

1

Anne-chie Wang

- National Taiwan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PhD Candidate.
- Research interest: Medical Sociology,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STS), Death and Dying.
- Dissertation topic is about how people arrange “good death” with the help of medical professions and technology in Hospice care.

2

Outline

1. Solitary death and unclaimed dead in Sociology
2. Regulations about unclaimed dead in Taiwan
3. A story about dying without next to kin

3

1. Unclaimed Dead and Solitary Death in Sociology

4

Sociological inquiries about death and dying

- Three lines of sociological inquiry over the past two decades (Riley 1983):
  - the self and dying as social process.
  - bereavement, grief, and the meaning of loss by death.
  - norms and the social structure for defining and managing dying and death.

Riley Jr, John W. 1983. "Dying and the meanings of death: Sociological inquiri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9 (1):191-216.

5

- Many studies of social organizations and arrangements for handling the dying and the bereved.
- The researchers treated death as if it were a special kind of social problem (Riley 1983).
- The studies about unclaimed dead and solitary death in Sociology are emerging.

6

The Unclaimed

- Stefan Timmermans, a professor of sociology at UCLA and author of "Postmortem: How Medical Examiners Explain Suspicious Deaths."
- Pamela Prickett, a professor of sociology at the University of Amsterdam.

http://www.pamelajprickett.com/the-unclaimed.html
http://www.stefantimmermans.com/research

7

'A Witness That They Were Here': Los Angeles Honors 1,457 of Its Unclaimed Dead

https://www.nytimes.com/2018/12/07/us/los-angeles-dead-homeless.html

8

Timmermans & Prickett's project

- Every year, the cremated remains of approximately 1600 people are buried by the County of Los Angeles in a single common grave, their lives marked only by the year of death.
- What happens when someone dies and relatives are unable or unwilling to bury the body?
- Who are these people, and how did they end up there? What are their stories? What social marks did they leave on the world?

9

The preparation for dying in solitary

- Chizuko Ueno (上野千鶴子) , sociology professor in Tokyo University.
- *O hitori-sama no saigo* (*おひとりさまの最期, The last moment of one person*).
- "It is OK to die alone".
- Actively prepare for the dying and after death.

10

Unclaimed dead in Taiwan

- Census of the Institute of Forensic Medicine, Ministry of Justice in 2019, there are 3000 cases of unclaimed dead at hand.
- Averagely increase 393 cases per year.
- In those cases, the officials can identify the identity of 252 cases and 141 cases remain unknown.

11

Vulnerable groups in the post-mortem right

- Elderly people
- The Report of the Senior Citizen Condition Survey in 2017, issu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8.97% (289 thousands) of elderly (> 65 yr) live alone.
  - 5.47% (183 thousands) of elderly (55-64 yr) live alone.
- The government tried to promote some community care project to trace those elderly.

12

Vulnerable groups in the post-mortem right

- Homeless people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registered around 3000 homeless people per year (most are male).
- Some charities held funeral for th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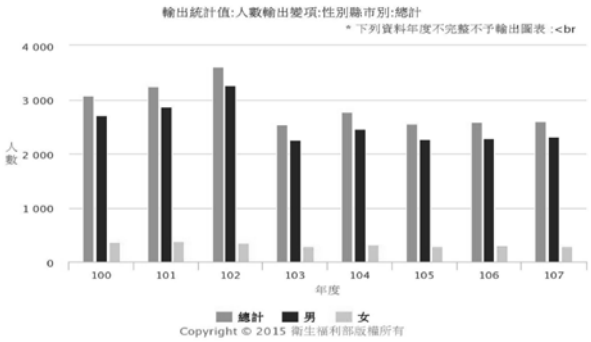

2. Regulations about Unclaimed Dead in Taiwan

Mortuary Service Administration Act

- Issued on 17 July, 2002 by Ministry of the Interior
- The Act promotes the compliance of modern needs while taking into consideration both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 and the public interest in order to enhance citizens' quality of life (Article 1).

https://mort.moi.gov.tw/frontsite/cms/serviceAction.do?method=viewContentDetail&iscancel=true&contentId=MjUxNg==

15

Article 61

- Adults and those with such capacity may make a will beforehand or do it by filling out a letter of intent on funeral matters for after his death while still alive.
- Families or contractors handling the funeral matters shall respect the will or the letter of intent of the deceas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16

Article 69-1

After the handling process of corpses due to unexpected events or unknown causes of death by military policemen or police st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law, local public mortuary services shall be notified to handle the corpses' transportation matters, except for those that have been claimed by a family member and have other mortuary served commissioned. Ownerless corpses are not allowed to have referrals nor other mortuary services commissioned to provide services.

17

Article 69-2

After receiving the preceding notice, public funeral homes shall handle the body or commission another mortuary service to transport the corpse to the funeral home and handle it in accordance with relevant regulations.

18

Article 69-3

- Those who fail to comply with the regulations in the preceding 2 articles or who have no permission from the family members to transport the corpse may not request any fees.
- The handling autonomy statute of ownerless corpses without family members' claiming mentioned in Section 1 shall be conducted by the municipal or county (city) competent authority.

19

- There is more regulation about before death rather than after death. Like Hospice Palliative Care Act and Patient Autonomy Act. Those acts legalized the advanced directive (living will) to secure the patients' preference toward medical treatment.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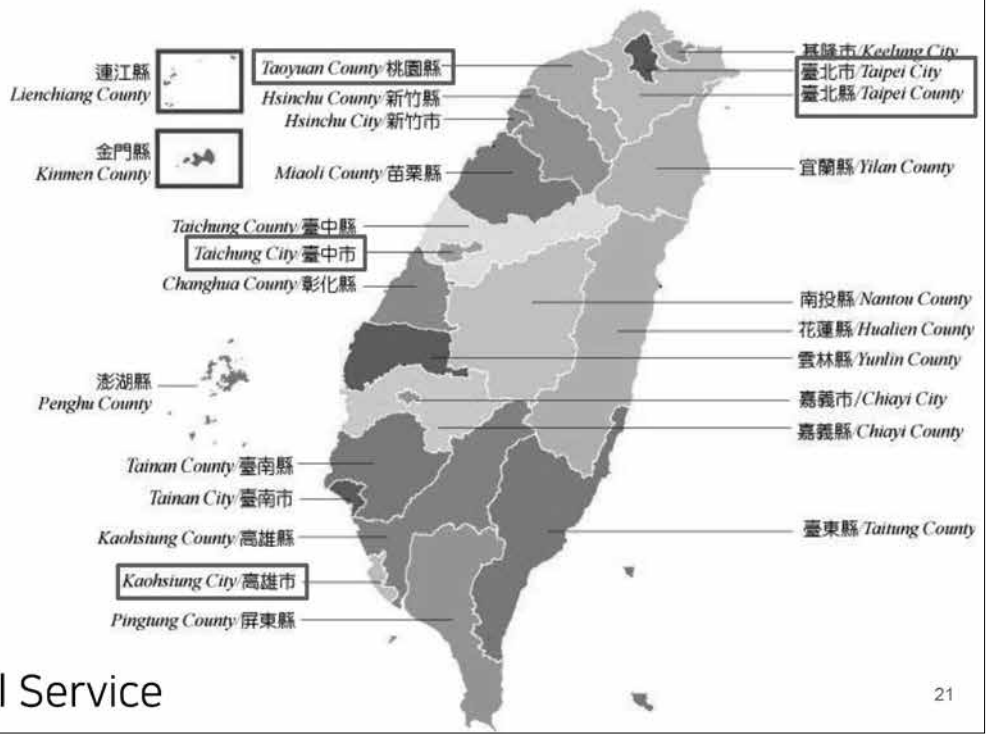

Public Funeral Service

Public Funeral Service

https://images.app.goo.gl/yfhZNeiw3NzHrtXx5

For Buddhist

For Christianity and Catholicism

https://images.app.goo.gl/PBu2NBdki9reg1xF6

23

3. a Story about Dying without Next to Kin

24

a social worker's case in Hospice ward

- Mr. Chen (pseudonym) is a middle age man who is terminally ill no one accompanies him.
- He left his family 30 years ago because he felt guilty about beating his wife.
- He had tried to go home but he still not have the courage.

25

- The social worker said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ould help him to hold the funeral. But the social worker encourages Mr. Chen to contact his family. Usually, the family prepares a clean suit for the deceased. Mr. Chen asks the social worker prepare a sports suit for him.
- Mr. Chen died peacefully in Hospice ward.

26

- The social worker informed Mr. Chen wife he was died and he felt sorry for treat her badly.
- His wife bring the daughter and son to mortuary and decided to take care of his funeral rather than helding by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27

Conclusion

- The public raising awareness about the social issue of Solitary death and unclaimed dead.
- Mortuary Service Administration Act and social organization help to handle the unclaimed dead.
- However, the Taiwan society still needs a systemized statistics on unclaimed deaths and specific regulation about the post-mortem right.

28

行旅死亡人取扱件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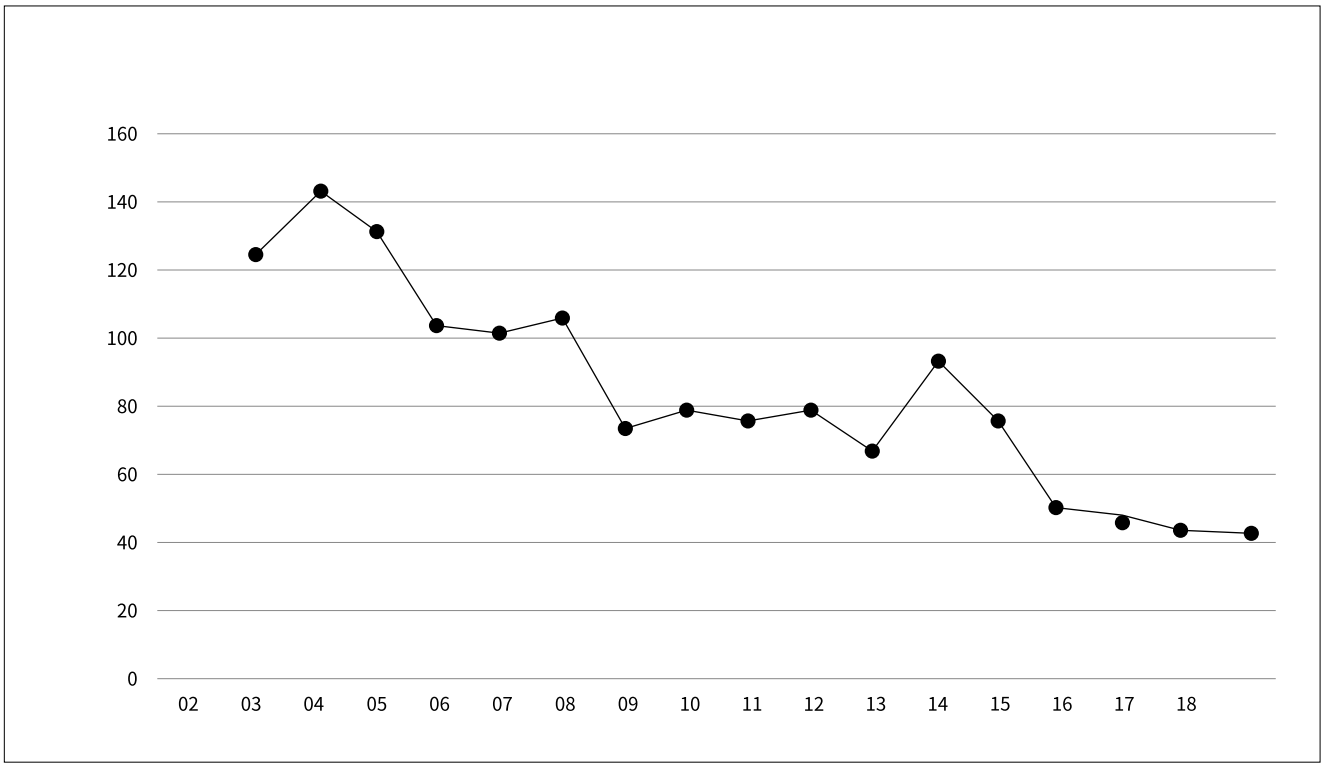

行旅死亡人　区別･年度別件数

区別/ 年度別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北区	7	12	17	13	11	15	14	8	5	4	7	9	7	4	2	3	0
都島区	2	8	4	4	11	4	2	4	8	7	5	12	7	2	3	1	6
福島区	8	7	2	5	1	7	2	3	2	1	3	3	6	6	0	1	0
此花区	5	9	4	2	4	4	4	5	2	2	5	3	2	2	1	1	1
中央区	12	13	13	10	9	9	12	12	9	11	3	3	7	4	5	6	8
西区	4	2	2	3	1	5	0	2	3	2	1	2	1	0	0	1	1
港区	6	5	9	5	2	5	3	3	2	4	0	5	2	2	1	1	0
大正区	3	2	2	3	4	3	1	1	1	1	0	1	2	0	0	1	0
天王寺区	3	5	1	3	1	1	3	3	2	0	3	1	0	1	0	0	0
浪速区	8	10	5	14	7	6	3	4	4	9	9	5	4	5	3	3	4
西淀川区	4	5	6	5	4	2	2	1	1	4	6	6	4	4	1	3	4
淀川区	6	8	3	7	8	7	8	9	8	10	6	5	3	6	7	3	6
東淀川区	3	3	8	5	3	6	1	2	3	0	0	6	4	3	2	9	5
東成区	1	0	1	1	0	0	0	1	1	0	0	0	0	1	2	0	0
生野区	1	2	0	3	2	1	0	0	0	2	1	1	0	0	2	0	0
旭区	6	1	2	0	3	1	2	1	1	1	0	0	0	0	2	2	1
城東区	3	2	2	1	0	2	2	1	0	1	3	2	2	1	2	0	0
鶴見区	1	1	0	0	0	0	0	0	1	3	1	0	0	0	2	0	0
阿倍野区	4	5	5	2	1	1	0	1	2	0	0	3	0	1	2	0	1
住之江区	11	12	13	5	7	6	5	5	2	3	3	3	4	3	2	4	6
住吉区	1	2	3	0	1	2	2	3	5	8	0	0	0	1	2	1	0
東住吉区	3	3	3	2	2	0	0	0	2	0	0	0	0	0	2	1	0
平野区	2	1	1	3	1	1	0	1	2	0	1	1	2	0	2	0	0
西成区	19	24	25	9	18	17	8	9	9	6	10	22	18	4	2	2	0
合計	**123**	**142**	**131**	**105**	**101**	**105**	**74**	**79**	**75**	**79**	**67**	**93**	**75**	**50**	**47**	**43**	**43**

遺留金品のない単身者が死亡した場合の生活保護法の取扱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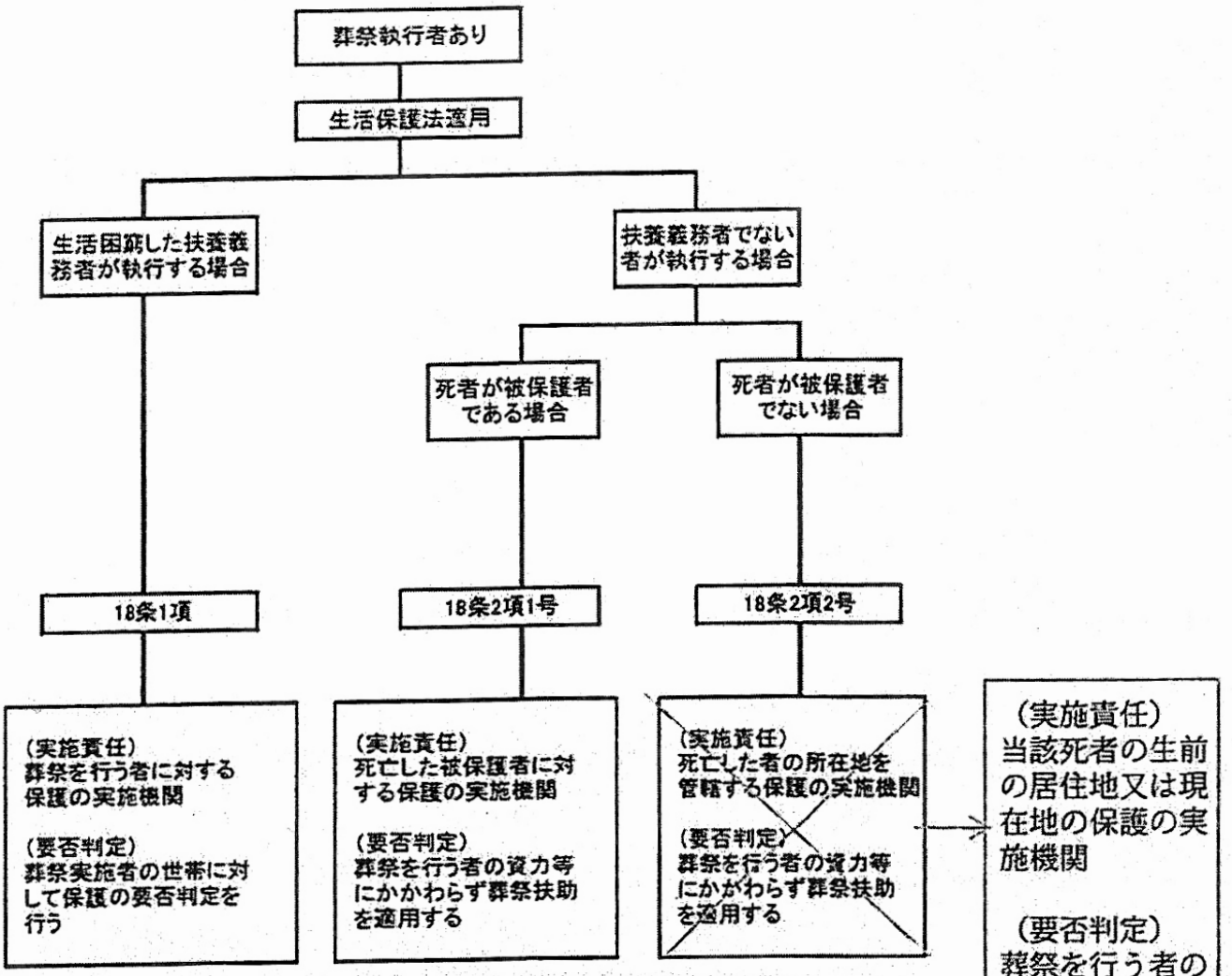

「行旅病人及行旅死亡人取扱法」「墓地・埋葬等に関する法律」の取扱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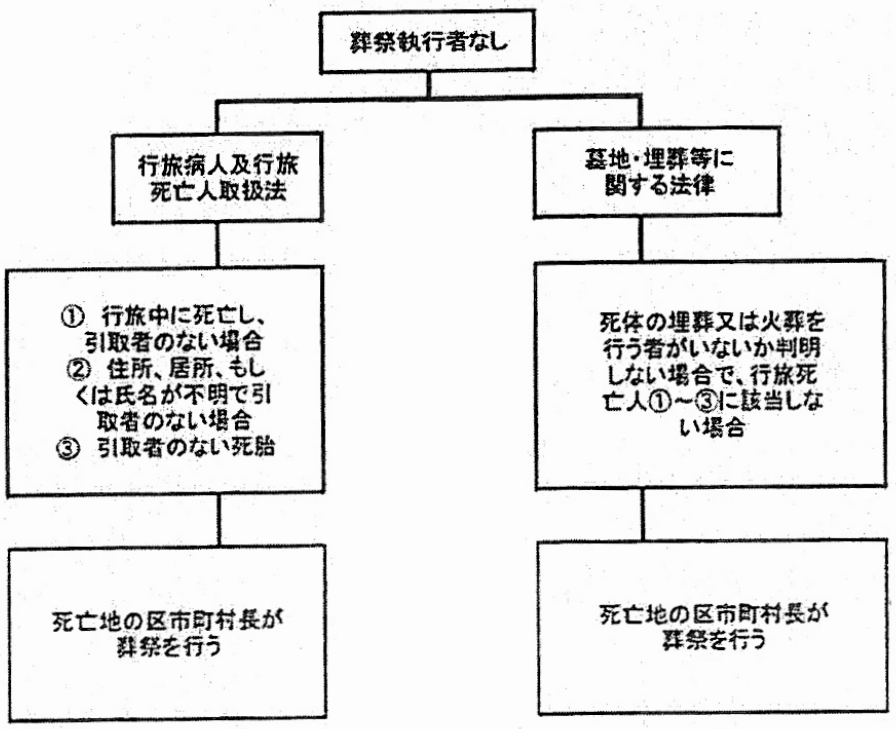

발제자 및 토론자 약력

박진옥

사단법인 나눔과나눔 상임이사

주요 경력

인권과 사회복지연구소 소장

(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직무대행

연구

무연고사망자 장례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양희철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

주요 경력

현 나눔과나눔 이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 TF 간사

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마츠시마 뇨카이(松島 如戒)

일본 LISS 대표

주요 약력

1937 경성 출생

1988 도쿄 스가모에 타카노산 진언종 공덕원 도쿄별원, 스가모 평화영원 건립

1990 혈연과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는 합장묘 '모야이의 비' 건립, '모야이의 모임' 설립

1993 임의후견 · 생전계약 수탁기관 '리스시스템' 설립

2000 계약감시기관 <NPO일본생전계약등결제(決濟)> 기구 설립. 리스시스템 NPO인증.

2009 <NPO지구에 보은하는 숲 만들기 추진기구> 설립

히가쉬타니 유키마사(東谷幸政)

정신의료 국가 배상 청구 소송 연구회 대표

주요 경력

종합병원 소셜워커

생활보호시설(정신장애인 전문) 소셜워커

대학, 전문학교 상근 시간강사

도립 보건소 데이케어 그룹 워커

공동 작업소, 그룹홈의 시설장

주요 활동

사야마 차별재판 규탄 전국공투회의 의장

도쿄도 정신보건복지사협회 부회장

이나기시 여성행동 추진협의회 부회장

일본 자치단체 노동조합 복지 관련 노조 연락협의회

일본병원지역정신의학회이사

'정신의료'지 편집동인

나가노현 정신 의료 인권 센터 대표

정신의료 국가배상청구소송연구회 대표

저서 및 논문

복지제도요람, 복지노동 등

일본과 한국의 지역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의료복지서비스에 관한 만족도 비교 연구 등

왕안기(王安琪)

국립대만대학교 박사과정

연구 분야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성의 사회학, 교육사회학,
과학기술, 민족지학, 양적 연구방법

학력

2018 국립대만대학교(대만 타이베이)
사회학과 박사 수료
2012-2015 국립칭화대학(대만 신주) 사회학 석사
2008-2012 대만국립교통대학(대만 신주)
인문사회과학 학사

주요 경력

2019 타이베이 의과대학 "환자 자주 권리법", 강의
2017-현재 동아시아의 과학기술사회학: 국제저널,
서평편집위원 보조

학회 자료

2018.11 "자기결정: 대만에서의 좋은 죽음에 관한 담론"
(제11회 다음세대를 위한 글로벌 워크숍, 일본 교토)

송인주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원

주요 경력

현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위원
(연구평가본부 연구개발팀)
사회학 박사

주요 연구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고독사 위험 고립가구 특성가 지원모형 연구

김효석

법무사

주요 약력

법무사김효석사무소 대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법인후견센터장(역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겸

법무사연수원 교수(역임)

서울가정법원 후견사무상담위원

서울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연구 및 저서

성년후견 법령집

성년후견 심판실무

친권과 미성년후견의 실무

성년후견 실무매뉴얼【Ⅰ】재산목록보고서 작성 실무 -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실무 포함-

성년후견 실무매뉴얼【Ⅱ】가정법원의 허가 실무 -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명령 포함-

성년후견 실무매뉴얼【Ⅲ】후견종료와 후속 업무 -

피후견인의 사망을 중심으로-

야마다 미노루(山田 實)

카마가사키 지원기구 이사장

주요 약력

에히메(愛媛)현 출생

1969 히가시오사카시의 한 사립대학 진학,

대학 봉쇄 주모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퇴학 처분

1973 카마가사키로 이주

1976 카마가사키 일용노동조합 결성, 부위원장 취임

1980 카마가사키 일용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일용노동에도 종사하는 등 현장투쟁과 임금투쟁견인

1992 불황기에 반(反)실업투쟁을 주도

1999 NPO카마가사키 지원기구 설립

2000 NPO카마가사키 지원기구 대표 취임 후 특별취업

사업 도입 및 홈리스자립지원법 성립에 중심적인 역할

2010 조합위원장을 후진에게 넘김

화우공익재단 활동 소개

목표

화우공익재단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법률복지 증진과 법치주의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목적 사업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법률구조 활동

공익 입법을 위한
연구 및 지원 활동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회봉사활동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한
개인 및 단체와의 협력

시민 법치주의 심화를 위한
활동 재단 이야기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활동 원칙

무상이익 및 수혜평등의 원칙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그 목적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조직 구성

화우공익재단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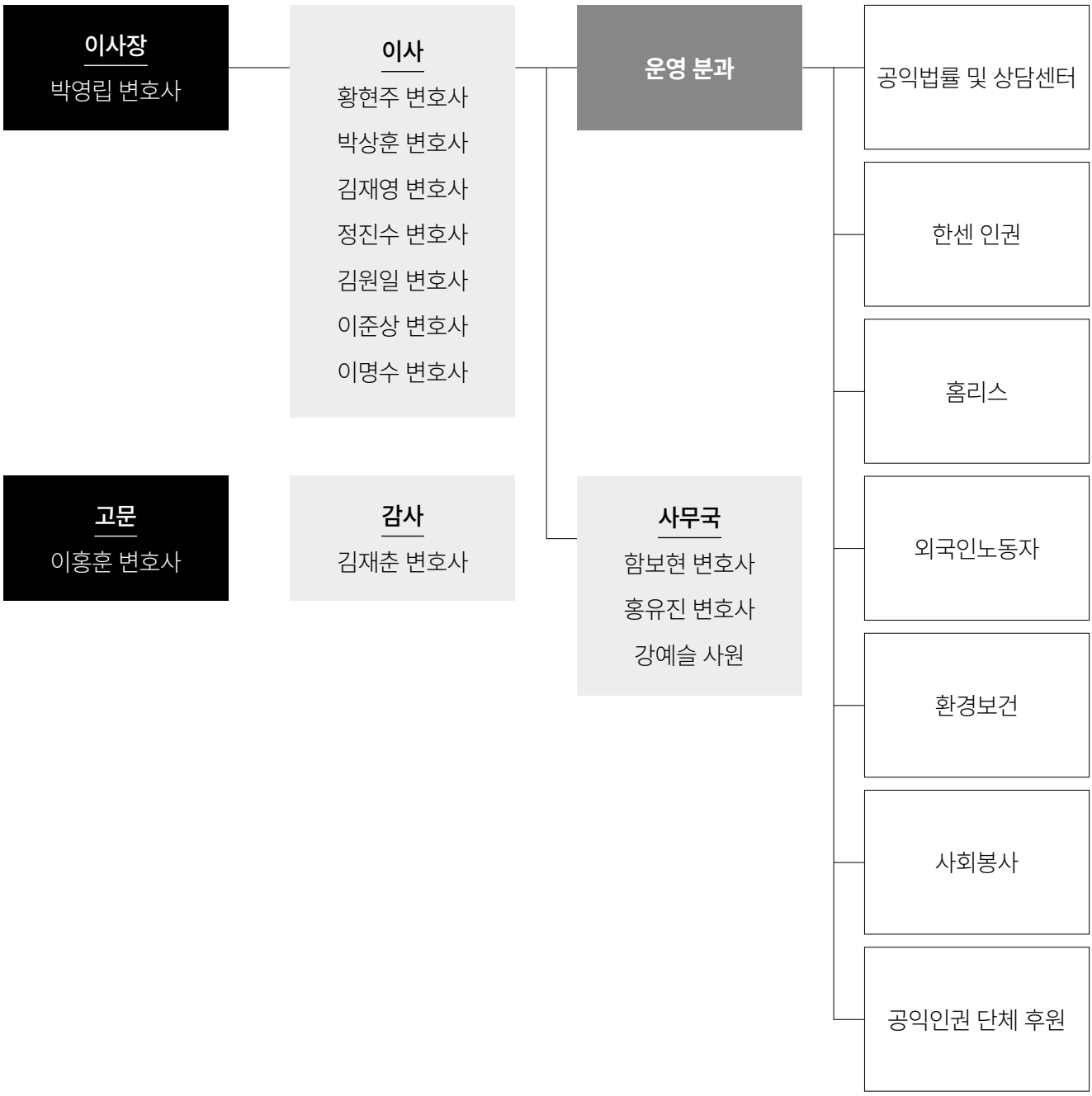

2019

09. 사후자기결정권(고립사, 무연사와 공영장례)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07. 교육부 원격영상진로멘토링 화우공익재단 단체 표창
05. 전북 소방본부 MOU 체결
04. 소방관 위험직무순직 재심 인정 결정
04. 제9회 화우 공익세미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법제 모색> 개최
04. 공익논집 출판기념회 개최
02. 해외입양인 지원 법률가이드북 출간

2018

12. 홈리스 추모제 거리 법률 상담
12. 제8회 화우 공익세미나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의 제도적 해결방안> 개최
12. 홈리스를 위한 제1회 달팽이 음악제 개최
11. 교실법 대회 개최
11. 제7회 화우 공익세미나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관한 법적 쟁점> 개최
10. 달팽이 소원 후원물품 전달
10. 청소년 법률교육 프로그램 시작
09. LA 해외입양인 시민권 이슈 세미나 참석
09. 연변 조선족 장애인 가정 겨울나기 석탄 지원
08. 나눔과 나눔, 사후 자기결정권(내 뜻대로 장례)을 위한 입법청원 및 정책방안 연구 지원
07. 가축살처분 공익세미나
05. CHANGE 해외입양인 권익옹호단체 MOU 체결
05. 홈리스 쪽방촌 어버이날 행사 후원금 전달
04. 홈리스 봄날밴드 필리핀 뮤직캠프 후원금 전달
03. 제6회 화우공익세미나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개최
02. 베트남 시민평화법정 현지조사
01. 연탄나눔 봉사활동

2017

12. 홈리스 추모제 거리 법률상담
12. 존엄한 마무리, 무연고자 장례지원 '나눔과 나눔' 업무협약
12.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 <인도 공익소송 및 국내 도입 방안>
12. 로펌공익네트워크 연례 심포지엄
12. 화우공익재단 2대 이사장 박영립 취임
11. 섬 농장 체불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 성립
10. 제5회 화우 공익세미나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논쟁>
09. 연변 조선족 장애인가정 겨울나기 석탄지원
09. 로펌공익네트워크 하반기 라운드테이블 공동주관
08. 고려인 '너머' 법률지원 업무협약
08. 가리봉동 노래방 살인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08. 난민인권센터 법률지원 공동 업무 협약
07. 쪽방촌 여름나기 후원물품 전달
07. 제4회 화우 공익세미나 <국가의 국민 안전보장의무>
05. 중앙입양원 법률지원 업무협약
05. 성남시 주최 '세계인의 날' 행사 거리 법률 상담
04. 세월호 유가족 후원물품 전달
03. 제3회 화우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과 한계>
03.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 영아긴급지원센터 법률지원 업무협약
02. 캄보디아 NGO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승소 확정
02. 한센인 단종, 낙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승소
01. 연탄나눔 봉사활동

2016

12. 제2회 화우공익세미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쟁점 토론> 개최
11. 로펌공익네트워크 발족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공동 개최
10. 공익법률 연구지원사업 시작
10.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MOU체결
09. 한센인 강제 단종, 낙태 피해 국가배상 청구소송(4차) 승소(서울고법)
02. 동자동사랑방 법률지원 시작
02.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 혼인취소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01. 법무법인(유) 화우,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 CSR List 2016 선정
01. 법무법인(유) 화우,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 단체부문 수상

2015

1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 종합계획 현장 토론회> 공동주최
07. 제1회 화우공익세미나 <감염병의 예방, 관리와 전염을 둘러싼 각종 법률적 문제점과 해결 방안 : MERS 사태를 중심으로> 개최
01. 화우공익재단 창립식(이사장 이홍훈)

2014

12.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 오픈
12.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정책 과제> 심포지엄 공동주최
12. 나누는 사람들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이후 매년 개최
11. 화우공익재단 법무부 인가
09. 홈리스행동 MOU체결
06.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MOU 체결
05. '햇쌀 같은 화우' 홀몸 어르신을 위한 쌀 및 후원금 전달
05. 공익변호사라운드테이블' 후원
04. 한센인 강제 단종, 낙태 피해 국가배상 청구소송 첫 승소(순천지원)
02. 학림사건 국가배상 청구소송 일부 승소, 배상 판결(서울중앙지법)

2013

10. 나누는 사람들 후원의 날 행사 및 성금 모금 '꽃보다 나눔' 이후 매년 개최
08.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인권법 캠프' 첫 후원

2012

11. 나누는 사람들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
03. 화우공익위원회(위원장 이홍훈) 발족

2011

10. 한센인 강제 단종·낙태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

2006

03. 일본정부 한국 한센인 2명에 보상 인정
02. 일본 의회 '한센인보상법' 개정

2004

08. 일본정부의 보상 거부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 첫 소장 접수
05. 한센인권변호사 첫 소록도 방문

2003

01. 법무법인(유) 화우 봉사동아리 '나누는사람들' 발족

법무법인(유) 화우

T 02)6003-7000
www.hwawoo.com

(재) 화우공익재단

T 02)6182-8011
www.hwawoo.or.kr

PRINTED WITH SOY INK 화우는 환경을 생각해 공기름 잉크를 사용했습니다.